경기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2022. 9. 2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 계 연

목 차

Ⅰ. 개요 ····· 3

Ⅱ. 일반회계 ····· 4

1. 예산규모 ····· 4

2. 세입예산 ····· 4

3. 세출예산 ····· 14

Ⅲ. 특별회계 ····· 46

Ⅳ.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54

Ⅴ. 주요사업 ····· 57

-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Ⅰ 개 요

1. 제안경위

o 제 출 자 : 경기도지사

o 제 출 일 : 2022. 9. 8.

o 제출사유 :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편성배경

o 부동산 거래 절벽에 따른 세수 감소로 대대적 세출 구조조정 추진

o '21년 결산에 따른 법정경비, 국비내시에 따른 도비 매칭사업 반영

o 지역경제 활성화, 도민 복지, SOC사업 등 민생 예산 최대한 반영

3. 편성규모

o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단위: 억 원)

구분		'22년 제2회 추경안 (A)	'22년 1회 추경 (B)	증감 (C=A-B)	증감률 (D=C/B)	비고
예 산		356,708	350,426	6,282	1.8%	
	일반회계	319,765	314,099	5,666	1.8%	
	특별회계	36,943	36,327	616	1.7%	

o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단위: 억 원)

구분	'22년 제2회 추경안 (A)	'22년 기정액 (B)	증감 (C=A-B)	증감률 (D=C/B)	비고
기금	60,591	62,047	△1,456	△2.3%	

Ⅱ 일반회계

1. 예산규모 : 31조 9,765억 원 ('22년 1회 추경 대비 5,666억 원↑)

< 증 감 내 역 >

(단위 : 억 원)

세 입	5,666	세 출	5,666
■ **지방세수입**	**△16,182**	■ **법적의무적 경비**	**△2,131**
취득세 △19,654, 등록면허세 △1,177 레저세 2,023, 지방소비세 2,626		■ **재무활동**	**△1,363**
■ **세외수입**	**2,336**	통합계정 상환금 △1,800, 기타특별회계 전출금 △25,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462	
도비반환금수입 2,053, 부담금 212, 기타수입 71		■ **국고보조사업**	**8,636**
■ **지방교부세**	**952**	국비 6,012, 도비 2,624	
분권교부세 보전분 893, 특별교부세 등 59		■ **용도지정사업**	**263**
■ **국고보조금**	**5,973**	■ **행정운영경비**	**△64**
국고보조금 4,990 균특 266, 기금보조금 717		■ **자체사업**	**438**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2,587**	경상 △33, 투자 47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9,000, 순세계잉여금 2,520 한류월드공기업특별회계 청산금 747, 국비반환금 등 320		■ **예비비** 1추 내부유보금	**△113**

2. 세입예산

가. 총괄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2년 제2회 추경안(A)	구성비	'22년 1회 추경 (B)	구성비	증 감 (C=A-B)	증감률 (C/B)
계	319,765	*(100%)*	314,099	*(100%)*	5,666	1.8%
지방세수입	155,264	*(48.5%)*	171,446	*(54.6%)*	△16,182	△9.4%
세외수입	7,266	*(2.3%)*	4,930	*(1.6%)*	2,336	47.4%
지방교부세	2,567	*(0.8%)*	1,615	*(0.5%)*	952	58.9%
국고보조금등	131,646	*(41.2%)*	125,673	*(40.0%)*	5,973	4.8%
보전수입등	6,779	*(2.1%)*	4,045	*(1.3%)*	2,734	67.6%
내부거래	16,243	*(5.1%)*	6,390	*(2.0%)*	9,853	154.2%

나. 지방세수입

o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17조 1,446억 원) 대비 △1조 6,182억 원 감소한 15조 5,264억 원으로,

- 보통세는 취득세 △1조 9,654억 원, 등록면허세 △1,177억 원을 감액 조정하고, 레저세 2,023억 원, 지방소비세 2,626억 원을 증액 조정함
- 목적세*는 증감 없음

* 지역자원시설세(기정액 4,456억 원), 지방교육세(기정액 2조 1,083억 원)

o ’22년도 지방세 징수 실적(7월말 기준)을 살펴보면, 예산액(목표액) 17조 1,446억 원 중 9조 225억 원을 징수(52.6%)하였으며, 전년도 같은 기간 징수액 9조 4,271억 원 대비 △4,046억 원 감소함

-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세목별 징수액은 부동산 거래량 감소 등에 따라 취득세 △1조 1,011억 원, 등록면허세 △361억 원이 감소하였고,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에 따라 레저세 2,309억 원, 지방소비세 4,090억 원이 증가하였음

< 지방세 세목별 징수실적(’22년 7월말 기준)[1] >

(단위 : 억 원)

구 분	2022년			2021년			전년대비 징수증감액 (7월까지) (A-B)
	목표액 (기정예산액)	2회추경 예산액	징수액 (7월까지) (A)	목표액 (최종예산액)	징수액 (7월까지) (B)	징수액 (최종액)	
계	171,446	155,264	90,225	166,468	94,271	167,987	△4,046
취득세	110,036	90,382	54,224	106,255	65,235	109,301	△11,011
등록면허세	7,005	5,828	3,430	6,365	3,791	6,133	△361
레저세	1,515	3,538	2,373	379	64	431	2,309
지방소비세	27,351	29,977	16,517	27,520	12,427	26,915	4,090
지역자원시설세	4,456	4,456	2,631	4,322	2,519	4,545	112
지방교육세	21,083	21,083	11,326	21,627	11,060	21,766	266
지난년도 수입	-	-	△276	-	△825	△1,104	549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요구자료 1차-3번 다.

o 최근 3년간 취득세 예산액 및 징수실적[2]을 살펴보면,

- 예산액(목표액)은 ’19년도 6조 7,958억 원, ’20년도 7조 2,890억 원, ’21년도 10조 6,255억 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였으며,

- 초과수납액(징수실적-예산액)은 ’19년도 5,337억 원, ’20년도 1조 7,163억 원, ’21년도 3,046억 원이 발생하였음

o 이는 경기도 부동산 거래량 증가 추세(’19년 869,349건→’20년 1,018,913건→’21년 946,113건)에 따른 것으로, 道는 이와 같은 추세가 ’22년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측하여, ’22년도 본예산 취득세 예산액을 11조 36억 원으로 편성하였음(’21년 대비 3,781억 원↑)

- 그러나, ’22년도 경기도 부동산 거래량(7월말 기준)은 386,052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584,133건) 대비 △198,081건 감소(’19년 대비 92,516건↓, ’20년 대비 220,256건↓)하였으며, 이에 따른 취득세 징수액도 전년도 대비 △1조 1,011억 원 감소함

< 부동산 거래 현황(’19년 ~ ’22년 7월)[3] >

(단위 : 건)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총계	7월까지	총계	7월까지	총계	7월까지	7월까지
경기도(계)		869,349	478,568	1,018,913	606,308	946,113	584,133	386,052
	공동주택	459,989	238,738	562,524	346,565	414,147	273,244	136,272
	개별주택	21,484	11,910	28,458	16,784	27,352	16,990	11,436
	토지	251,639	151,545	283,755	164,359	317,838	188,939	147,605
	비주거용 부동산	136,237	76,375	144,176	78,600	186,776	104,960	90,739
전국(계)		2,968,660	1,641,219	3,569,015	2,076,776	3,362,393	2,060,292	1,468,487

※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 / 개별주택(단독다가구주택) / 토지(순수토지) / 비주거용부동산(상·공업용 등)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요구자료 1차-3번 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요구자료 1차-3번 나.

o 「지방자치법」 제137조에 따라 道는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세입예산의 규모를 먼저 정하고, 세입예산 내 재정지출의 우선순위에 따라 세출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므로, 지방세 수입 예산액을 보다 정확하게 추계해야 함에도,

- 道는 최근 5년간 지방세 수입 예산액을 당초 예산 대비 최소 9.2%('19년) ~ 최대 32.9%('21년) 과소 추계한 바 있으며,

- '22년도는 금회 추경예산안으로 당초 예산 대비 △9.4%를 감액 편성하여 제출한바(과다 추계), 이는 정확하지 못한 세수 추계로 재정을 적시적소에 투입하지 못한 것으로, 재정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따라서, 道는 금회 추경 지방세 수입 예산안의 세목별 증·감 편성 근거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 있으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세 세수 추계의 신뢰성과 적정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지방세 세입 예·결산 현황('17년 ~ '21년)[4] >

(단위 : 억 원)

연도	예 산 액			결 산 액		초과수납액	
	당초예산 (a)	추경증감액 (b)	최종예산 (c=a+b)	징수결정액 (d)	실제수납액 (e)	당초예산대비 (f=e-a)	최종예산대비 (g=e-c)
2021년	126,361	40,107	166,468	169,883	167,987	41,626 (32.9% ↑)	1,519
2020년	125,658	△313	125,345	146,211	144,181	18,523 (14.7% ↑)	18,836
2019년	116,077	4,471	120,548	128,807	126,700	10,623 (9.2% ↑)	6,152
2018년	107,498	6,148	113,646	123,377	121,196	13,698 (12.7% ↑)	7,550
2017년	94,079	8,581	102,660	112,737	110,532	16,453 (17.5% ↑)	7,872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요구자료 1차-3번 가.

< ’22년 제2회 추경 지방세 수입예산안 세목별 증·감 편성현황[5] >

(단위 : 억 원, %)

구분	2022년도				
	기정액 (a)	제2회 추경 예산안 (b)	증감액 (c=b-a)	증감률 (c/a)	증감사유 (道 세정과)
지방세수입	171,446	155,264	△16,182	△9.4	
보통세	145,907	129,725	△16,182	△11.1	
취득세	110,036	90,382	△19,654	△17.9	과거 부동산거래 위축기인 2011년 진도비[6]를 적용
등록면허세	7,005	5,828	△1,177	△16.8	최근 3년 평균 진도비 적용
레저세	1,515	3,538	2,023	133.5	최근 정상 영업년도(’19)의 60%* 반영 * ’22.4.25. 전면 개장
지방소비세	27,351	29,977	2,626	9.6	부가가치세 추경 예산액* 기준 *국세 2회 추경(부가가치세) : 당초 77.5조 → 변경 79.3조
목적세	25,539	25,539	-	-	
지역자원시설세	4,456	4,456	-	-	
지방교육세	21,083	21,083	-	-	

o 아울러 ’22년도 지방세 세수가 감소 추세인 만큼, 지방세 체납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현실적이고 다각적인 징수방안을 강구하는 등 지방세 징수 활동을 강화할 필요 있음

< 지방세(도세) 체납 징수 현황(연도별)[7] >

(단위: 억 원, %)

연도	이월 체납액	이월체납 조정액 (a)	체납 징수액 (b)	체납 징수율 (b/a)	결손액 (c)	지난년도 미수납액 (d=a-b-c)	현년도 미수납액 (e)	총 미수납액 (f=d+e)
2022 (7월말)	1,748	1,832	700	38.2	51	1,081	2,786	3,867
2021	1,825	1,939	971	50.1	144	824	924	1,748
2020	1,932	2,031	959	47.2	201	871	954	1,825
2019	1,936	2,036	977	48.0	173	886	1,046	1,932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요구자료 1차-1번(자치행정국 세정과)
6) 진도비 : 목표 세수 대비 징수 실적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요구자료 1차-4번 나.

나. 세외수입

o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4,930억 원) 대비 2,336억 원 증가한 7,266억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56억 원, 임시적 세외수입 2,133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47억 원을 증액 편성함

- 경상적 세외수입은 사업수입 27억 원, 이자수입 29억 원 등을 증액 조정하고,
- 임시적 세외수입은 보조금 반환수입 2,053억 원, 자치단체간부담금 68억 원 등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 지방행정제제·부과금은 부담금 145억 원 등을 증액 조정함

다. 지방교부세

o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1,615억 원) 대비 952억 원 증가한 2,567억 원으로, 보통교부세 893억 원, 특별교부세 등 59억 원을 증액 편성함

o 주요편성내역은,

- ’22.8.8~11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20억 원(안전관리실)
- ’22.8.8~16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10억 원(안전관리실) 등임

라. 국고보조금 등

o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12조 5,673억 원) 대비 5,973억 원 증가한 13조 1,646억 원으로, 국고보조금 4,990억 원, 균형발전특별회계 266억 원, 기금 717억 원을 증액 편성함

o 주요편성내역은,

- 지역화폐 확대 발행지원 206억 원(경제실)
-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운영 52억 원(보건건강국)
- 통합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지원 34억 원(도시주택실)
- 2022년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 25억 원(경제실) 등임

마. 보전수입 등

o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4,045억 원) 대비 2,734억 원 증가한 6,779억 원으로,

- 순세계잉여금 2,520억 원, 전년도이월금(국고보조금사용잔액) 124억 원, 보조금등반환금(국고보조금등반환금) 100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 융자금원금수입(농어촌주택개량융자금) △10억 원을 감액 편성함

o 순세계잉여금은 회계연도의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이인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반납금을 제외한 순(順)잉여금으로, 초과세입과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의해 발생함

- 2021회계연도 결산 결과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6,535억 원으로, 초과세입금 848억 원, 집행잔액 5,687억 원 발생에 따른 것임

o ’22년도는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하지 않았으며,

-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2021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6,535억 원 중 일부인 4,015억 원을 편성하여 세출 재원*으로 활용하였고,

* 국고보조금 매칭등 2,445억 원, 자체·투자사업 등 1,570억 원

-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순세계잉여금 잔액 2,520억 원을 편성하여, 전액을 통합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함[8)]

< 연도별 순세계잉여금 세입예산 편성현황 >

(단위: 억 원)

편 성 구 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비 고
당초예산(A)	4,000	5,000	0	
추경증감(B)	4,604	16,512	6,535	(1추) 4,015억 원 (2추안) 2,520억 원
최종예산(C=A+B)	8,604	21,512	6,535	

8)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5조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 제1호에 따른 전입금으로 재정안정화 계정에 적립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Y^n) 결산서상 지방세 증가액이 최근 3년(Y^{n-1}~Y^{n-3}) 평균 지방세 증가액을 30퍼센트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상 잉여금 중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이월금 및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의 반납금을 제외한 금액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지방세 초과 징수로 인해 발생한 금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에 의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지방재정법」 제29조제1항에 의한 조정교부금, 「지방세징수법」 제17조제2항에 의한 징수교부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의한 출연금을 공제한 후 산정한다.

마. 내부거래

o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6,390억 원) 대비 9,853억 원 증가한 1조 6,243억 원으로, 전입금 9,853억 원을 증액 편성함

- 전입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전입금 9,000억 원, 한류월드공기업특별회계 청산금 747억 원,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106억 원을 증액 편성함

* 누리과정운영(71억 원↑), 무인교통단속장비등 설치(31억 원↑), 옐로카펫 등 설치사업(7억 원↑), 다함께돌봄사업(△2억 원), 차상위이하 아동방과후 보육료(△35백만원)

o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되며,

- 통합계정은 각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회계·기금의 설치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예탁받은 후, 채무 상환 또는 재원이 필요한 타 회계·기금에 융자하는 기능을 하고,

- 재정안정화계정은 지방세, 순세계잉여금 등 수입이 증가한 경우, 그 일부를 의무 적립(순세계잉여금의 30%이상 등)하여 지방채 등의 상환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는 기능을 가짐.

o 금회 추경예산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9,000억 원은 전액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전출된 것으로,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에 따라,

-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 상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의 합계금액이 최근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또는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재정안정화계정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고,

-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적립금 총액의 70%를 초과할 수 없음*

* 다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용도로 운용하는 경우 초과할 수 있음

< 재정안정화계정 조성현황(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단위: 백만원, %)

’21년도말 조 성 액 (a)	’22년도 기금운용계획			’22년말 조 성 액 (e=d+a)	비 고
	수입 (b)	지 출* (c)	증 감 (d=b-c)		
1,529,645	261,506	1,009,022	△747,516	782,129	

* 지출계획 : 일반회계전출금 9,000억 원,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원리금상환 1,090억 원

< 재정안정화계정 ’21년도 적립금(일반회계→기금전출) 현황 >

(단위: 억 원)

’21년 당초	’21년 제2회 추경	’21년 제4회추경	계
996	3,647	9,821	14,464

< 재정안정화계정의 용도(조례 제15조 제3항) >

용 도	비 고
①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 상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일반회계 전출 가능
②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재정안정화 계정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③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지방채·차입금 상환
④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원리금 상환	
⑤ 그 밖에 재정안정화 계정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o 道는 금회 추경 예산안 지방세 수입을 감액(△1조 6,182억 원) 편성함에 따라, 국고보조사업 도비 매칭 및 자체·투자사업 편성 등 세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대규모의 일반회계 전입금(9,000억 원)을 편성한 것으로 보이나,

- 조례에 따른 재정안정화계정 일반회계 전출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구체적·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할 필요 있으며,

- 그간 일반회계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융자*받은 사업비의 향후('23년~'29년) 상환 예정 원리금이 1조 8,184억 원[9] 규모인 점 등을 고려하여,

* 주요 융자사업 : 제1차·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1조 5,543억 원) 등

- 금회 추경예산안 편성을 통한 재정안정화계정 예치금 사용이, 향후 세입 감소 및 경기 침체 발생 가능성 등에 따른 道 재정운용에 문제는 없는지 살펴볼 필요 있음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요구자료 1차-15번

3. 세출예산

가. 총괄현황

1) 재원규모

< ’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재원 배분현황[10] >

(단위: 억 원, %)

구 분	제2회추경 예산안(A)	기정액 (B)	증감 (C=A-B)	증감율 (C/B)	주요 증감사유
총 계	**319,765**	**314,099**	**5,666**	1.8%	
법정·의무적 지출 등	281,289	276,061	5,228	1.9%	
법적의무적경비	88,755	93,406	△4,651	△5.0%	시군 조정교부금 등(△5,723억) 교육청 지원경비(1,448억↑) 등
국고보조금매칭	153,055	144,419	8,636	6.0%	국비등(6,012억↑),도비(2,624억↑)
용도지정	11,324	11,061	263	2.4%	진위역-오산시계 도로확포장(45억↑), 누리과정 운영지원(71억↑) 등
행정운영경비	4,991	5,055	△64	△1.3%	인력운영비(△63억), 기본경비(△1억) 등
기타회계 등 전출금	13,973	13,998	△25	△0.2%	소방안전(△48억),도시재생(6억↑), 지역자원시설세(17억↑)
기금전출금 등	5,077	2,557	2,520	98.6%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2,520억↑)
예수금원리금상환·반환금 등	3,314	4,652	△1,338	△28.8%	통합계정 상환금(△1,800억), 반환금 등(462억↑)
예비비	800	913	△113	△12.4%	내부유보금(△113억)
경상사업	2,781	2,814	△33	△1.2%	여비(△29억), 일반운영비(△15억) 등
자체·투자사업	35,695	35,224	471	1.3%	시설비·부대비(391억↑) 민간자본이전(△96억) 등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요구자료 1차-6번 나. 활용

o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증가 규모는 5,666억 원으로,

- 지방세 수입 예산 감액 편성 및 2021회계연도 결산 결과 정산 등에 따른 법적경비 △4,651억 원 감액 편성,

※ 시·군 조정교부금 등 △5,723억 원, 도세 징수교부금 △376억 원, 교육재정부담금 △345억 원, 지방교육세 1,793억 원

- 국비 등 추가 내시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8,636억 원 증액 편성,

※ 국고보조금 등 6,012억 원, 도비 2,624억 원

- 자치단체간 부담 등에 따른 용도지정사업 263억 원 증액 편성,

※ 자치단체간 부담금 180억 원, 교육비특별회계 부담금 등 83억 원

-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64억 원 감액 편성,

※ 인력운영비 △63억 원, 기본경비 △1억 원

- 회계·기금간 거래 등 재무활동으로 1,157억 원 증액 편성,

※ 기타특별회계 전출금 △25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수금 상환 △1,800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전출금 2,520억 원, 반환금 기타(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462억 원

- 제1회 추경 예산 예비비(내부유보금) △113억 원 감액 편성,

- 일반운영비 등 경상사업비 △33억 원 감액 편성 등을 제외하면,

-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자체·투자사업 규모는 471억 원임

o 금회 추경 예산안은 지방세 세입 감액(△1조 6,182억 원)에 따른 세출 재원 확보를 위해, 세입에서는 세외수입 2,336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전입금 9,000억 원 등을, 세출에서는 세출 구조조정(기정사업 예산 감액) △783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상환금 △1,800억 원, 예비비(내부유보금) △113억 원 등을 편성하였음

- 세출 구조조정의 경우,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 금년도 예산의 결산 결과에 따라 편성되는 '23년도 세입(순세계잉여금(집행잔액))예산을 미리 확보하여 금년도 재정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 금회 추경예산안 감액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사업계획 수립시 사업 대상자 수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이 아닌지 면밀히 검토하여, 그 결과를 ’23년도 본예산 편성시 반영해야 할 것임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상환금의 경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제2차) 지급 재원 마련을 위해 ’21년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으로부터 융자(예수금)한 4,550억 원을 금년도에 전액 상환하기 위하여, 본예산에 ‘예수금 원리금 상환’ 4,650억 원(이자 100억 원 포함)을 편성하였으나, 금회 추경 예산안에 상환금 원금 △1,800억 원을 감액한 것으로,

- 지방세 세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20년(제1차)~’21년(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일반회계)을 위해 타 기금으로부터 융자한 지역개발기금 예탁금 1조 5,543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금 4,550억 원의 상환계획을 점검할 필요 있음

- 예비비(내부유보금)의 경우,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00억 원 등 △113억 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한 것으로, 본 위원회는 내부유보금 사용 조건으로 ‘신용보증 중복 지원 문제 등에 대한 충분한 대책 마련’을 부대의견을 통해 제시한 바 있으며, 道는 금회 추경예산안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00억 원*을 다시 요구한바, 부대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을 본 위원회에 보고할 필요 있음

  * 고금리 대환 및 저금리 운영자금 특례 보증

o 금회 추경예산안 법적경비* 반영 내역을 위원회 요구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법령·조례에서 정한 최소(의무) 반영 필요액을 편성한 것으로 보임

  * 징수교부금, 조정교부금, 법정전출금 등

< 제2회 추경예산안 법적경비 편성 내역[11] >

(단위 : 백만 원)

연번	실국명 (부서명)	사업명	통계목	2회추경(안)까지 편성액	최소(의무) 반영 필요액	근거규정
1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조정교부금	시군조정 교부금	5,155,842	5,155,842	지방재정법 제29조 등
2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조정교부금	시군기타재원 조정비	13,162	13,162	지방재정법 제29조 등
3	자치행정국 (세정과)	도세징수교부금	징수교부금	331,402	331,402	지방세징수법 제17조 등
4	평생교육국 (교육협력과)	지방교육세	법정전출금	2,391,849	2,391,84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등
5	평생교육국 (교육협력과)	교육재정부담금	법정전출금	681,138	681,13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등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요구자료 1차-7번

2) 분야(기능)별[12)]

(단위: 억 원)

구 분	제2회추경 예산안(A)	기정액(B)	증감액 (C=A-B)	증감율 (C/B)	주요 증감사유
계	319,765	314,099	5,666	1.8%	
일반행정	67,841	73,156	△5,315	△7.3%	시군 조정교부금(△5,723억) 등 법정경비 감소
공공질서 및 안전	13,385	13,396	△11	△0.1%	소방안전특별회계 전출금(△308억)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260억↑) 등
교육	31,933	30,506	1,427	4.7%	교육재정부담금(△345억), 지방교육세(1,793억↑) 등
문화 및 관광	6,358	6,303	55	0.9%	평택 평화예술의 전당 건립(△50억)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105억↑) 등
환경	12,217	12,066	151	1.3%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67억) 전기자동차 구매지원(136억↑) 등
사회복지	127,444	123,370	4,074	3.3%	생활지원비(2,855억↑), 긴급복지(213억↑) 등
보건	11,945	8,466	3,479	41.1%	생활치료센터운영(103억↑), 격리입원치료비(3,036억↑) 등
농림해양수산	10,747	10,930	△183	△1.7%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지원(△211억), 안산 마리나항만개발사업(△147억) 등
산업중소기업에너지	8,395	7,747	648	8.4%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114억↑), 지역화폐 확대 발행지원(385억↑) 등
교통 및 물류	17,717	16,875	842	5.0%	2층 전기버스 보급 지원(9억↑), 수도권광역급행철도플러스 기본구상 용역(12억↑) 등
국토 및 지역개발	5,148	4,565	583	12.8%	남양주 화도-운수 도로확포장(200억↑), 평택 이화-삼계 도로확포장(100억↑) 등
과학기술	426	417	9	2.2%	LED 디스플레이 산업화 지원 기반 구축(4억↑), 메이커스페이스 전문랩 구축운영(4억↑) 등
예비비·기타	6,209	6,302	△93	△1.5%	내부유보금 감액(△113억) 등

1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요구자료 1차-6번 가.

나. 국비사업

o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국비사업은 총 517개 사업(부기명 기준), 기정액 대비 증감액 8,636억 원(↑)으로,

- 국비 등 6,012억 원(↑), 도비 2,624억 원(↑)을 편성함

< 제2회 추경예산안 국비사업 편성 현황(총괄)[13] >

(단위 : 백만 원)

구 분	사업개수 (부기기준)	기정액 (a)			증감액 (b)			예산안 (c=a+b)		
		계	국비 등	도비	계	국비 등	도비	계	국비 등	도비
계	517	6,582,937	5,560,244	1,022,693	863,641	601,239	262,402	7,446,578	6,161,483	1,285,095
국고보조금	351	6,056,939	5,093,503	963,436	738,353	499,069	239,284	6,795,292	5,592,572	1,202,720
균형발전특별 회계보조금	21	114,727	110,458	4,269	45,597	26,581	19,016	160,324	137,039	23,285
기금	136	411,271	356,283	54,988	75,755	71,653	4,102	487,026	427,936	59,090
교부세	9	-	-	-	3,936	3,936	-	3,936	3,936	-

o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함

- 국비사업 중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성립전 예산은 49개 사업, 기정액 대비 증감액 4,513억 원[14](↑)으로, 이 중 국비와 도비를 매칭하여 편성한 내역은 11개 사업 3,911억 원, 매칭 편성 도비는 1,654억 원임

- 국가로부터 소요액 전액이 교부되지 않거나 도비 부담사업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를 위해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 도비 부담사업 등 도의회 예산 심의·확정 과정을 거치지 않은 성립전 예산 사용에 대해서는 그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여 적용해야 함

1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요구자료 1차-9번 가.
1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요구자료 1차-9번 가. 다.

< 신규 국비사업 주요 편성현황[15](총사업비 5억 원 이상, 사업분야·예산액 順) >

(단위 : 백만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제2회 추경예산안 반영액			편성사유
			계	국비	도비	
1	자연재난과	'22.8.8.~11.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성립전)	2,000	2,000	-	양평 등 8개 시군 지원 [행정안전부재난관리정책과-3240 ('22.8.12.)호]
2	자연재난과	'22.8.8.~16.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2차 (성립전)	950	950	-	양평 등 4개 시군 지원 [행정안전부재난관리정책과-3340 ('22.8.18.)호]
3	장애인복지과	학대피해 장애아동 쉼터 설치비	1,142	571	571	학대피해 장애아동 쉼터 설치(2개소) [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2116(2022.4.26.)호]
4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 사업	648	381	267	주간보호시설 개보수, 장비보강 지원(20개 시군, 39개소)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3212(2022.6.23.)호]
5	질병정책과	수도권 감염병 전문병원	2,268	2,268	-	수도권 감염병전문병원 설치 지원 [질병관리청의료대응지원과-588 ('22.4.26.)호]
6	보건의료과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운영	10,300	5,150	5,150	생활치료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지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8817('22.7.18.)호]
7	공공의료과	노후 승강기, 공조기 교체 및 본관 내진보강	1,222	611	611	22년 3차 기능보강 지원사업 선정 [보건복지부공공의료과-3649 ('22.7.12.)호]
8	공공의료과	심야전기 노후설비 교체	830	415	415	22년 3차 기능보강 지원사업 선정 [보건복지부공공의료과-3649 ('22.7.12.)호]
9	기후에너지 정책과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	1,152	960	192	탄소중립을 구현한 도시 조성 지원 [환경부녹색전환정책과-2364 (2022.6.17.)호]
10	기후에너지 정책과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탄소중립지원(성립전)	1,000	500	500	목표관리제 대상 건물(지자체) 에너지효율 개선 지원 [환경부기획재정담당관-5138 (2021.12.16.)호]
11	기후에너지 정책과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탄소중립지원(성립전)	500	500	-	목표관리제 대상 건물(지자체) 에너지효율개선지원 [환경부기획재정담당관-5138 (2021.12.16.)호]

1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요구자료 1차-9번 나.

연번	부서명	사업명	제2회 추경예산안 반영액			편성사유
			계	국비	도비	
12	체육과	옥길문화체육센터 건립 지원(성립전)	500	500	-	부천시 옥길문화체육센터 건립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체육진흥과-164 ('22.1.10.)호]
13	가족다문화과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성립전)	591	516	75	2022년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결정통보 [여성가족부가족지원과-2041 ('22.6.10.)호]
14	도로안전과	성남 S-BRT 기본 및 실시설계	1,163	775	388	성남 S-BRT 전용차로 등 설계비 지원 [국토교통부간선급행버스체계과 -706('21.12.20.)호]
15	축산정책과	공동자원화 시설 개보수 지원	516	516	-	노후화된 공동자원화 시설 개보수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축산환경자원과 -7248('21.12.31.)호]
16	산림과	6.28.~7.1 집중호우 산림피해복구	603	436	167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예산 변경통지(제19차) [산림청기획재정담당관실-2640(2022.7.29.)호]
17	지역금융과	지역화폐 확대 발행지원	38,486	20,592	17,894	22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교부결정 통지(추경) [행정안전부지역금융지원과-2183('22.7.25.)호]
18	소상공인과	2022년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	3,250	2,500	750	2022년 소공인 복합지원센터(화성시 동탄5동) 구축사업국고보조금교부결정안내 [중소벤처기업부지역상권과-729(2022.7.11.)호]
19	주택정책과	통합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지원(성립전)	3,443	3,443	-	통합공공임대주택 건설비 국비 지원 [국토부주택기금과-6875('22.6.28.)호]
20	농수산물 검사부	수산물 현장검사소 설치 지원	1,500	750	750	수산물 현장검사소 설치 추진 [식약처농수산물안전정책과-5272('21.12.15.)호]
21	남부기획 조정과	사무국 정무직, 행정직 공무원 인건비 (성립전)	543	543	-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 운영지원 국고보조금 교부 [행정안전부자치분권제도과-2208(2022.6.22.)호]

라. 자체사업(경상·투자사업)

1) 신규편성

o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신규 자체사업은 91개 사업(부기명 기준), 408억 원임

< 신규편성 사업현황(총괄)[16] >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 개수 (부기기준)	기정액 (a)	증감액 (b)	예산안 (c=a+b)
계	91	-	40,813	40,813
경상사업	49	-	1,152	1,152
투자사업	42	-	39,661	39,661

o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 지방소멸대응 추진 지원 4억 원(기획조정실)

※ 도내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지역 대응 추진사업(가평군, 연천군)

- 경기도 통합데이터센터 구축 10억 원(기획조정실)

※ 중간·실시설계 추진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연구용역 2억 원(균형발전기획실)

※ 기본계획 및 비전·발전 전략 수립

- 여객자동차터미널 운영비 지원 5억 원(교통국)

※ 코로나19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재정 손실 지원

-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플러스 기본구상 용역 12억 원(철도항만물류국)

※ 도지사 공약 및 대통령 지역 정책과제 신규노선 검토

- 야생조수 차단 지원사업 3억 원(축산산림국) 등임

※ 동절기 AI 감염 야생 조수 차단을 통한 AI 선제 방역

1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요구자료 1차-10번 가.

o 중앙부처 등 국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도비 부담이 필요한 국가직접 지원* 신규사업으로,

* 국비는 국가가 사업수행기관(공기관 등)에 道를 경유하지 않고 사업비를 직접 교부하므로, 도비 부담분은 자체사업으로 편성됨

- 반도체 소부장 요소기술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23억 원(경제실)

※ '22년 국비 51억 원 →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 AI기반 미래차 제조데이터 활성화 사업 20억 원(경제실) 등임

※ '22년 국비 20억 원 → 경기테크노파크

o 신규 편성 사업의 경우 금년도 본예산 편성시 미처 예측하지 못하였거나, '23년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을 만큼 시급한지 여부, 사업 추진 필요성 및 규모의 적정성, 연내 집행 가능 여부, 계속사업의 경우 향후 중기재정투입 계획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신규 자체사업 주요 편성 현황(1억 원 이상)[17] >

(단위 : 백만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통계목	제2회추경 예산안	편성 사유
1	인구정책 담당관	지방소멸대응 추진 지원	자치단체 자본보조	364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신설
2	정보통신 보안담당관	경기도 통합데이터센터 구축	시설비	952	정보자원의 효율적 운영기반 확보 (통합데이터센터중간·실시설계)
3	총무과	신청사 방호설비 설치공사	시설비	211	방호취약구역 스피드게이트 3개소 설치
4	장애인자립 지원과	기회수당	자치단체 경상보조	20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신설 수당 지원
5	공공의료과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구급차 교체	민간위탁 사업비	105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3개소(용인, 여주, 남양주) 구급차 교체
6	아동돌봄과	아동급식지원 신규플랫폼 연동배달시스템개발	공기관등 자본적 위탁사업비	150	아동급식카드-배달특급 상호결제시스템 연계 추가기술개발

1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요구자료 1차-10번 나.

연번	부서명	사업명	통계목	제2회추경 예산안	편성 사유
7	균형발전 담당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연구용역	연구 용역비	200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기본계획, 비전·발전 전략 수립
8	DMZ 정책과	DMZ일원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	자산물품 취득비	250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개정으로, 기부채납재산 중 병영시설 필수물품 구입
9	도로정책과	남양주 화도-운수 도로확포장	시설비	20,000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보상비
10	도로정책과	화성 매향-화산(1) 도로확포장	자치단체간 부담금	1,500	'22년 12월 준공 사업으로, 道-화성시간 협약 분담 잔여 사업비
11	도로정책과	평택 진위역 -오산시계(동서축1) 도로확포장공사	시설비	4,500	LH 부담 잔여 사업비
12	하천과	남양주 구운천 송천1지구 지방하천정비사업	시설비	800	상습 침수지역으로 신속 정비를 위한 설계비 필요
13	광역교통정책과	경기도형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778	대중교통 이용 불편지역 해소를 위해 경기도 DRT 운행지역 확대 추진(시범사업 1개 → 8개 시군)
14	버스정책과	여객자동차터미널 운영비 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497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자 매출액 급감에 따른 대응
15	철도정책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플러스 기본구상 용역	연구 용역비	1,200	도지사 공약 및 대통령 지역 정책과제 신규 노선 검토를 위한 용역비 반영
16	동물방역 위생과	야생조수 차단 지원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	288	동절기 AI 감염 야생 조수 차단을 통한 선제 방역
17	산림과	동절기 담수지 자동 결빙방지 장치 설치	자치단체 자본보조	114	동절기에도 얼지 않는 담수지를 통한 진화헬기 급수원 확보 및 신속한 산불 진화
18	산업정책과	(산단대개조) 지역선도산업단지 연계협력사업(R&D) (국가직접지원)	공기관등 경상적 위탁사업비	488	산업단지 산업생태계 강화 및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유인할 유망상품 중심의 협력-혁신 지원 등 필요

연번	부서명	사업명	통계목	제2회추경 예산안	편성 사유
19	산업정책과	반도체 소부장 요소기술 실증기반 테스트베드구축 (국가직접지원)	공기관등 자본적 위탁사업비	2,300	산업부 주관 특화단지 중심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20	투자진흥과	첨단 반도체기업 고용보조(부천) (국가직접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750	차세대 전력반도체 분야 육성을 위한 '외국인직접투자 현금지원계약' 체결에 따른 고용보조 사업
21	미래산업과	산업 밸류체인 디지털전환 지원센터 조성 (국가직접지원)	출연금	300	산업통상자원부「산업혁신 기반구축사업 시행계획」에 따른 공모 선정
22	과학기술과	마이크로LED 디스플레이 산업화 지원 기반구축 (국가직접지원)	출연금	430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기반구축' 공모 선정에 따른 도비 매칭 예산 반영
23	과학기술과	메이커스페이스 전문랩 구축운영 (국가직접지원)	공기관등 자본적 위탁사업비	375	중소벤처기업부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운영' 공모 선정에 따른 도비매칭 예산 반영
24	과학기술과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금	포상금	274	발명진흥법, 식물신품종 보호법, 경기도 공무원 등 직무발명 조례에 따른 지급 의무사항
25	데이터 정책과	AI 기반 미래차 제조데이터 활성화 사업 (국가직접지원)	출연금	2,000	중소벤처기업부 주관「2022년 지역특화 제조데이터 활성화사업」공모 선정에 따른 편성
26	해양수산과	귀어학교 개설	자산물품 취득비	104	경기도 귀어학교 운영을 위한 자산 및 물품 구입
27	사회적 경제과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설립 및 운영지원	출연금	385	설립('22년 9~10월 예정) 및 기관 운영에 필요한 최소 예산 편성

2) 증액편성

o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사업 중 기정예산 대비 증액 편성한 자체사업은 105개 사업(부기명 기준)으로, 813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함

< 증액편성 사업현황(총괄)[18] >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 개수 (부기기준)	기정액 (a)	증감액 (b)	예산안 (c=a+b)
계	105	1,268,402	81,332	1,349,734
경상사업	50	17,361	1,862	19,223
투자사업	55	1,251,041	79,470	1,330,511

o 유형별 주요 증액 편성사업을 살펴보면,

o 사업량 확대 등에 따른 증액 편성으로,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21억 원(보건건강국, 기정액 103억 원)

  ※ 출산연령 고령화 등에 따른 시술 건수 증가

-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14억 원(경제실, 기정액 1,100억 원)

  ※ 고금리 대환 및 저금리 운영자금 특례 보증 확대 등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0억 원(복지국, 기정액 1,074억 원) 등임

  ※ 사전추계가 어려운 미신청자, 합산 10년 이상 거주자 등 신청분 지급(2,811명↑)

o 지원단가 조정 등에 따른 증액 편성으로,

- 누리과정 운영 지원 71억 원(여성가족국, 기정액 6,213억 원)

  ※ '22년도 어린이집 보육료 단가 인상분(26만 원→28만 원) 등 반영

- 도교육청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63억 원(농정해양국, 기정액 1,910억 원)

  ※ 물가상승 등

-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13억 원(농정해양국, 기정액 110억 원) 등임

  ※ 물가상승 등

1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요구자료 1차-10번 가.

o 공공기관 운영비(인건비 등) 증액 편성으로,

-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운영 지원 34억 원(경제실, 기정액 156억 원)

※ 당초예산 인건비 9개월분 편성에 따른 추가 편성

- 해외 경기비즈니스센터 운영 3억 원(경제실, 기정액 34억 원)

※ 환율인상에 따른 해외 인력 인건비 보전

-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운영 지원 1억 원(경제실, 기정액 359억 원) 등임

※ 직원 통근버스 임차비용

o 도로·하천 정비 등 SOC 사업 편성으로,

- 지방도 보도 설치사업 15억 원(건설국, 기정액 73억 원)

※ 통학로 보도 요청 구간 설계비 반영 등

- 양평 흑천 수해상습지 개선 사업 24억 원(건설국, 기정액 36억 원) 등임

※ 집중호우시 침수로 고립되는 마을 민원 해소 등

o 증액편성사업은 사업량 확대, 지원단가 조정 등 증액 사유에 대한 합리적 근거 제시가 필요하며, 사업 추진실적, 정확한 수요 조사에 따른 산출 근거 제시 여부, 유사·중복 사업 유무, 연내 집행 가능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 증액편성 자체사업 주요 현황(1억 원 이상 증액)[19] >

(단위 : 백만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통계목	기정액 (a)	제2회 추경(안) (b)	제2회 추경(안) 증감액 (b-a)	증액편성사유
1	복지 사업과	노숙인 재활·요양시설 운영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4,668	5,514	846	2022년 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른 노숙인시설 인건비 증액분 반영
2	청년복지 정책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자치단체 경상보조	107,408	109,376	1,968	사전추계가 어려운 미신청자, 합산 10년 이상 거주자 등의 신청으로 사업량 증가

1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요구자료 1차-10번 다.

연번	부서명	사업명	통계목	기정액 (a)	제2회 추경(안) (b)	제2회 추경(안) 증감액 (b-a)	증액편성사유
3	노인복지과	저소득 노인가구 난방비 및 건강보험료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5,963	6,266	303	재산공제액 확대('21년 10월)에 따른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확대
4	노인복지과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	21,574	23,874	2,300	평균 인정 자수 및 이용률 증가
5	노인복지과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7,111	7,255	144	'22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 반영
6	건강증진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10,300	22,417	12,117	'22년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 출산연령 고령화에 따른 시술 건수 증가 및 지원 횟수 확대
7	정신건강과	지역사회전환시설 운영지원	민간위탁금	2,310	2,448	138	충원 인력 7명에 대한 인건비(6개월 미반영분) 반영
8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남한산성 가공배전선 지중화	자치단체 자본보조	173	417	244	한국전력공사의 통신설비 지중화(㈜KT) 등 추가 공사 요청에 따른 사업비 증액
9	보육정책과	누리과정 운영 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621,258	628,327	7,069	'22년도 어린이집 보육료 단가 인상분(20천원) 반영 및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비 등 반영
10	노동정책과	경기도 노동복지센터 운영 지원 (편의시설설치등)	민간위탁 사업비	549	887	338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확장 설치에 따른 구조보강 및 소방시설, 석면제거 등 안전상 추가 공사 비용
11	철도운영과	경전철 환승할인 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2,687	3,046	359	'21년 환승할인 지원금 정산에 따른 추가분(김포시)
12	일자리경제정책과	경기도일자리재단 운영지원	출연금	36,050	38,716	2,666	일자리재단 주사무소 임시이전에 따른 리모델링비 지원
13	지역금융과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출연금	109,967	121,370	11,403	지원규모 확대 및 특례보증에 따른 손실보전필요
14	특화기업지원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운영지원	출연금	15,570	18,944	3,374	소요예산 대비 당초 예산 부족(인건비 등)

연번	부서명	사업명	통계목	기정액 (a)	제2회 추경(안) (b)	제2회 추경(안) 증감액 (b-a)	증액편성사유
15	소상공인과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운영지원	출연금	35,898	36,018	120	직원 통근버스 임차 비용
16	외교통상과	해외 경기비즈니스센터 (GBC)운영	출연금	3,380	3,708	328	'22년 원-달러 환율 급등에 따른 해외운영예산(인건비등)부족발생
17	과학기술과	바이오센터 운영지원	출연금	1,006	1,231	225	바이오센터 무기계약직 연구원 인건비 미반영분 편성
18	친환경급식 지원센터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11,000	12,300	1,300	축산물 소비자물가 상승분 등 반영
19	친환경급식 지원센터	도교육청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지원	교육기관에 대한보조	191,000	197,300	6,300	물가상승 및 학생수 증가에 따른 도비부담금 추가 요구
20	원예 연구과	원예실험온실 및 하우스 연료비 등	공공 운영비	345	650	305	연료비 단가 상승에 따른 증액분 편성

< 도로·하천 관련 주요 사업 편성 현황[20] >

(단위 : 백만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기정액 (a)	제2회 추경(안) (b)	제2회 추경(안) 증감액 (b-a)	산출구분	집행률	공정률	
								공사	보상
1	도로 정책과	광주 실촌-만선 도로확포장	5,458	9,458	4,000	자치단체 부담금	14%	39%	78%
2	도로 정책과	광주 도척-실촌 도로확포장	10,106	13,506	3,400	자치단체 부담금	6%	42%	97%
3	도로 정책과	화성 갈천 -오산 가수 도로확포장	13,054	29,856	16,802	보상비/ 자치단체 부담금	13%	38%	50%
4	도로 정책과	남양주 와부-화도 도로확포장	3,179	7,179	4,000	지장물 이설	2%	10%	86%

2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요구자료 2차-5번. / 계속사업의 경우 신규 추가 부기(통계목 기준) 등 증액 편성에 포함하여 작성

연번	부서명	사업명	기정액 (a)	제2회 추경(안) (b)	제2회 추경(안) 증감액 (b-a)	산출구분	잡행률	공정률	
								공사	보상
5	도로 정책과	안성 불현-신장 도로확포장	5,000	12,000	7,000	공사비	82%	91%	99%
6	도로 정책과	이천 덕평-매곡 도로확포장	1,500	6,500	5,000	보상비	100%	35%	0%
7	도로 정책과	평택 이화-삼계(2) 도로확포장	3,205	13,205	10,000	공사비	99%	34%	100%
8	도로 안전과	지방도 보도설치 사업	7,268	8,788	1,520	공사비/ 설계비	19%	45%	65%
9	하천과	안성 율곡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2,500	4,200	1,700	공사비	56%	46%	100%
10	하천과	안성 월동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2,679	3,979	1,300	공사비	65%	37%	100%
11	하천과	김포 가마지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3,000	4,000	1,000	공사비	3%	5%	60%
12	하천과	파주 동문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6,000	7,500	1,500	보상비	36%	37%	94.5%
13	하천과	양평 흑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4,000	6,400	2,400	공사비	64%	10%	73%
14	하천과	광주 곤지암천 지방하천정비사업	5,000	5,700	700	공사비	59%	47%	81%
15	하천과	공모하천 지방하천정비사업	1,050	2,150	1,100	설계비	0%	0%	0%

3) 감액편성

o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사업 중 기정예산 대비 감액 편성한 자체사업은 205개 사업(부기명 기준)으로, △782억 원을 감액하여 편성함

< 감액편성 사업현황(총괄)[21] >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 개수 (부기기준)	기정액 (a)	증감액 (b)	예산안 (c=a+b)
계	205	404,760	△78,247	326,513
경상사업	112	17,467	△6,279	11,188
투자사업	93	387,293	△71,968	315,325

o 유형별 주요 감액 편성사업을 살펴보면,

o '코로나19 관련 사업 규모 축소' 등에 따른 감액 편성으로,

-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 지원 △50억 원(보건건강국, 기정액 50억 원)

  ※ 경기도의료원 코로나19 감염병전담병원 지정 해제

- 시외버스 운송업체 청소년 할인지원금 △23억 원(교통국, 기정액 33억 원)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도 예상과 달리 시외버스 청소년 이용률 저조

- 아동일시보호소 운영 △4억 원(여성가족국, 기정액 54억 원)

  ※ 코로나19로 입소 아동 제한 및 감소에 따른 보육사 배치 인원 감소(인건비 등)

- 국내교육 지원 △5억 원(자치행정국, 기정액 38억 원)

  ※ 코로나19로 공무원 집합교육과정 등 축소

- 기본소득 사업 추진 △4억 원(기획조정실, 기정액 5억 원)

  ※ 국외연수 및 정책토론회 미추진 등

- 경기도 청소년 역사원정대 사업 △4억 원(평생교육국, 기정액 4억 원)

  ※ 국외 탐방 사업 미추진

- 국제협력사업 △4억 원(평화협력국, 기정액 22억 원) 등임

  ※ 코로나19로 청년해외봉사단 사업 미추진

2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요구자료 1차-10번 가.

o ‘사업 수요 과다 예측, 사업 추진 지연’ 등에 따른 감액 편성으로,

-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211억 원(농정해양국, 기정액 780억 원)

※ 예상 농민 수 대비 자격요건 미충족 등에 따른 신청자 수 감소

-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 △20억 원(건설국, 기정액 247억 원)

※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미반영 시·군 예산 감액

- 시·군 레포츠 관광 활성화 사업 지원 △4억 원(문화체육관광국, 기정액 5억 원)

※ 시·군 공모 참여 및 신청 저조

- 경기도 장애인 누림 통장 △2억 원(복지국, 기정액 3억 원) 등임

※ 사업시행 지연(4월→9월)에 따른 5개월분 감액

o ‘정책 환경(국가·道·소송 등) 변경’ 등에 따른 감액 편성으로,

- 민간투자사업 운영수입 지원 △100억 원(건설국, 기정액 148억 원)

※ 道의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른 당초 손실보상금(통행료 징수금지에 따른 민자도로사업자 손실보전) 감액

-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15억 원(평생교육국, 기정액 64억 원)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 및 한국장학재단 장학대출제도 확대 등에 따른 수요 축소

- 기본소득 박람회 개최 △12억 원(기획조정실, 기정액 12억 원) 등임

※ 기본소득 정책방향 변경에 따른 박람회 미개최

o ‘공공기관 출연금(운영비) 집행잔액(이월액) 발생’ 등에 따른 감액 편성으로,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운영 지원 △28억 원(환경국, 기정액 55억 원)임

※ ’21년도 출연금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22년도 출연금 감액

o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의 감액 편성은, 결국 금년도 재정 투입 시기와 재원 배분의 적정성 측면에서, 재정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 道는 향후 예산편성시 정확한 수요 조사에 따른 적정한 사업계획 수립, 연내 집행 가능한 최소한의 예산편성 등 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강도 높은 방안을 추진할 필요 있음

< 연도별 집행잔액(불용액) 발생 현황[22] >

(단위: 백만 원)

구 분	2019회계연도			2020회계연도			2021회계연도		
	예산현액 (a)	불용액 (b)	불용률 (b/a)	예산현액 (a)	불용액 (b)	불용률 (b/a)	예산현액 (a)	불용액 (b)	불용률 (b/a)
합 계	28,406,720	796,597	2.8%	34,657,984	859,378	2.5%	40,798,484	612,517	1.5%
일 반 회 계	24,799,178	290,787	1.2%	30,939,702	214,214	0.7%	36,593,822	510,653	1.4%
특 별 회 계	3,607,542	505,810	14.0%	3,718,282	645,164	17.4%	4,204,662	101,864	2.4%

< 감액편성 자체사업 주요 현황(1억 원 이상 감액)[23] >

(단위 : 백만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통계목	기정액 (a)	제2회 추경(안) (b)	제2회 추경(안) 증감액 (b-a)	감액편성사유
1	비전전략 담당관	기본소득 정책토론회개최	행사운영비	100	-	△100	코로나19에 따른 정책토론회 미개최
2	비전전략 담당관	2022대한민국기본 소득박람회개최	공기관등 경상적 위탁사업비	1,200	-	△1,200	기본소득박람회 미개최로 전액 삭감
3	총무과	모범공무원 국외선진지시찰	국제화여비	281	-	△281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인한 사업 취소
4	인사과	공무원 교육훈련비	사무관리비	2,473	2,333	△140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교육과정 축소로 교육인원 감소
5	인사과	공무원 교육여비	공무원 교육여비	1,349	999	△350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교육과정 축소로 교육인원 감소
6	인사과	국외훈련 여비	국제화여비	1,229	1,029	△200	코로나19로 인한 단기 국외훈련 미실시 및 교육인원 감소
7	자산관리과	공공요금	공공운영비	4,000	3,100	△900	신청사 전기 사용량 추이 고려

22) 자치행정국 회계과(2021회계연도 결산심사 요구자료)
2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요구자료 1차-10번 라.

연번	부서명	사업명	통계목	기정액 (a)	제2회 추경(안) (b)	제2회 추경(안) 증감액 (b-a)	감액편성사유
8	복지정책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 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699	598	△101	보수교육비 인하(64천원→56천원)
9	청년복지 정책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운영	공기관등 경상적 위탁사업비	1,887	1,104	△783	선거법 등 외부 환경 요인으로 미집행된 상반기 홍보예산 감액
10	노인복지과	노인일자리 취·창업 초기투자비 및 노후시설 신제품 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987	853	△134	수행기관 초기투자비 등 사업량 감소에 따른 감액
11	노인복지과	지역노인보호전문 기관 등 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1,129	943	△186	'22년 국비 지원 단가 증가 등 반영에 따른 감액
12	노인복지과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	174,413	171,077	△3,336	이용률 및 수가인상률 감소
13	노인복지과	무연고 상속재산 공공관리인제	사무관리비	130	16	△114	사업수요 감소
14	장애인 복지과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자치단체 경상보조	324	144	△180	사업시행시기 지연(4월→9월)에 따른 불용예상액 감액
15	장애인 복지과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관리사 운영	공기관등 경상적 위탁사업비	293	190	△103	사회보장사업 신설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 및 채용절차이행 기간 소요에 따른 감액반영
16	질병정책과	코로나19 관련 종사자 후생복지 지원	공기관등 경상적 위탁사업비	1,000	-	△1,000	중앙 차원의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지원 등 보상 기실시로 전액 감액
17	보건의료과	코로나19 대응 민간구급차 운용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2,157	1,054	△1,103	생활치료센터 운영 종료
18	공공의료과	경기도의료원 본부 인건비 및 운영비	출연금	3,330	3,012	△318	경기도의료원 본부 이전 협의 지연에 따른 본부 이전비 전액 감액
19	공공의료과	우리회사 건강주치의 사업	공기관등 경상적 위탁사업비	2,495	2,123	△372	인력공백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등 감액

연번	부서명	사업명	통계목	기정액 (a)	제2회 추경(안) (b)	제2회 추경(안) 증감액 (b-a)	감액편성사유
20	공공의료과	경기북부권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	민간경상 사업보조	335	84	△251	경기북부권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설치 지연으로 감액
21	공공의료과	공립요양병원 치매기능보강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	1,125	693	△432	보건복지부 사업계획 보완 검토의견('22. 2. 17.)에 따라 사업내용 조정
22	공공의료과	경기도의료원 운영비 지원	출연금	5,000	-	△5,000	코로나19 감염병전담병원 지정 해제에 따른 운영비 미지원
23	감염병관리 지원단	경기도 감염병관리정보 시스템 운영	사무관리비	180	80	△100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축소 운영으로, 시스템 라이선스 구매와 홈페이지 등 최소 유지보수만 시행
24	건강증진과	치매예방 사업	민간위탁금	150	-	△150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업 추진 여건 불투명
25	환경정책과	경기환경에너지 진흥원 운영지원	출연금	5,543	2,771	△2,772	'21년도 집행 잔액 발생에 따라 '22년도 출연금 감액
26	광역환경 관리 사업소	사업소 이전 비용	사무관리비	182	-	△182	사업소 이전 일정 연기
27	예술정책과	문예회관 건립지원 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	500	303	△197	지원대상(오산시) 시비 미확보에 따른 도비감액
28	체육과	종목활성화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4,354	4,104	△250	코로나19로 인한 한중일 스포츠 교류(중국 및 일본 파견 불가 통보) 및 국제대회 현지 참관 취소로 인한 감액편성
29	체육과	경기도 레저스포츠 관광 활성화 (프로그램개발)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150	50	△100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시군 행사 축소 및 미추진, 시군 추경 시기 지연에 따른 예산확보 애로
30	체육과	경기도 레저스포츠 관광 활성화 (지역거점화)지원	자치단체 자본보조	325	-	△325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시군 행사 축소 및 미추진, 시군 추경 시기 지연에 따른 예산확보 애로

연번	부서명	사업명	통계목	기정액 (a)	제2회 추경(안) (b)	제2회 추경(안) 증감액 (b-a)	감액편성사유
31	교육협력과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이차보전금	6,400	4,900	△1,500	국가장학금 확대(장학금↑,대출↓)에 따른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수요 축소 반영
32	청소년과	경기도 청소년 역사원정대사업	공기관등 경상적 위탁사업비	419	-	△419	코로나19 상황으로 사업 미추진
33	아동돌봄과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308	198	△110	복지부 신규 센터 설치 수요 변경, 종사자 입·퇴사 등 경력 변동에 따른 감액
34	아동돌봄과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1,101	968	△133	동일 유사 국비사업(전문아동보호비) 신설('22.2.)로 인한 감액
35	아동돌봄과	아동일시보호소 운영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5,450	5,025	△425	코로나19 확산으로 입소 아동 제한·감소, 보육사 배치 인원 감소 등에 따른 감액
36	경기국제 평화센터	국제협력사업	민간위탁금	2,200	1,800	△400	코로나19의 지속으로 협력국 안전상황 및 참가 청년의 안전 우려로, 청년 해외봉사단 미추진
37	공정건설 정책과	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유지관리사업	공공운영비	112	-	△112	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운영 종료하고 정부시스템 통합 사용
38	도로정책과	민간투자사업 운영수입 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14,820	4,820	△10,000	일산대교 공익처분에 대한 법원 집행정지 확정에 따른 손실보상금 감액
39	도로정책과	안성 북부도로망 구축사업	시설비	500	-	△500	사업의 경제성 확보를 위해서 경부고속도로 연결이 필요하나, 경부고속도로 연결 시 오산-남사 서비스 수준 악화, 남사-안성 교차로 1차로 확장 등의 교통 개선대책 반영이 필요
40	도로안전과	교통안전박람회	공기관등 경상적 위탁사업비	290	-	△290	사업추진 방식 변경(매년→격년)에 따른 사업순연(2023)으로, '22년 사업비 전액 감액
41	도로안전과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24,731	22,731	△2,000	시군비 미편성에 따른 사업비 감액
42	하천과	남양주 용암천 지방하천정비사업	시설비	3,500	2,000	△1,500	재무상태 악화로 인한 공사 지연

연번	부서명	사업명	통계목	기정액 (a)	제2회 추경(안) (b)	제2회 추경(안) 증감액 (b-a)	감액편성사유
43	하천과	용인 금어천 수해상습지개선사업	시설비	4,500	2,900	△1,600	수용재결 검토에 따라 보상절차 지연
44	하천과	안성 청룡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시설비	1,000	-	△1,000	사업시행계획고시 지연으로 인한 보상 지연
45	하천과	김포 계양천 수해상습지개선 사업	시설비	4,500	2,200	△2,300	수용재결 검토에 따라 보상절차 지연
46	하천과	파주 문산천 지방하천정비사업	시설비	1,000	-	△1,000	편입토지 지적불부합선 발생으로 보상절차지연
47	하천과	파주 동문천 지방하천정비사업	시설비	2,000	1,500	△500	보상협의 지연
48	하천과	수원 원천리천 지방하천정비사업	시설비	700	-	△700	저수지 수문공사 특성 고려하여, 공사비 일괄확보 후 추진예정
49	하천과	양주 청담천(2지구) 지방하천정비사업	시설비	700	200	△500	하천기본계획 변경으로 준공 지연됨에 따라 집행 불가한 보상비 감액
50	하천과	하남 초이천 지방하천정비사업	시설비	1,350	450	△900	설계물량 감소(일부구간 광암지구편입)에 따라 감액
51	하천과	하남 감이천 지방하천정비사업	시설비	570	270	△300	설계물량 감소에 따라 일부 감액
52	하천과	양주 공릉천 지방하천정비사업	시설비	1,300	1,200	△100	상위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물량 감소
53	하천과	파주 금촌 지방하천정비사업	시설비	1,000	900	△100	상위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물량 감소
54	버스정책과	(시외)청소년할인 지원금	운수업계 보조금	3,300	1,010	△2,290	시외버스 청소년이용률 회복이 저조하여 지원금 규모 감액편성
55	버스정책과	(시내)청소년할인 지원금	운수업계 보조금	16,000	11,200	△4,800	시외버스 청소년이용률 회복이 저조하여 지원금 규모 감액편성
56	버스정책과	마을버스 청소년요금할인 결손보전	운수업계 보조금	4,542	3,500	△1,042	마을버스 청소년이용률 회복이 저조하여 지원금 규모 감액편성

연번	부서명	사업명	통계목	기정액 (a)	제2회 추경(안) (b)	제2회 추경(안) 증감액 (b-a)	감액편성사유
57	버스정책과	심야공항버스 지원	운수업계 보조금	1,778	918	△860	'22.4.1일부터 일상회복(방역체계 변경)에 따른 운행손실금 지원액 감소
58	축산정책과	농촌악취 저감실증 환경공동체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1,000	-	△1,000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부결 (민경보→연구용역 또는 시군 보조사업방식으로 변경)
59	외교통상과	교류공무원 숙소 임차보증금	기타자본 이전	400	250	△150	코로나19 영향으로 해외 교류 공무원 파견 취소(중국 1명)
60	과학기술과	경기테크노파크 및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육성지원	출연금	1,654	1,176	△478	국가직접사업으로, 국비 미편성됨에 따라 도비감액
61	농업정책과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78,026	56,967	△21,059	예상 농민수 대비 자격요건 (거주, 영농기간, 농업외 종합소득 37백만원 이상 등) 미충족에 따른 신청자 수 감소
62	농업정책과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자치단체 자본보조	1,300	925	△375	3차에 걸친 사업대상자 모집시 수요없음으로 인한 유보액 감액
63	농업정책과	경기창업스마트팜	자치단체 자본보조	330	-	△330	시·군별 자체 사업 추진 등 수요 부족에 따른 감액 편성
64	농업정책과	대한민국시도지사 협의회 공동연구분담금	공공운영비	100	-	△100	민선8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연구용역 추진계획 없음을 회신받아 전액 감액

마. 예산전용

o 예산의 전용은 재정 운영의 탄력성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49조에 따라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 6개 부서에서 1억 5천 3백만 원의 예산을 전용하였음('22년 8월말 기준)

o '경기도 노동복지센터 운영 지원(노동국)'은 당초 '편의시설 설치 등'(민간위탁사업비) 사업비로 5억 5천만 원을 편성하여 사업 추진 중,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추가공사 발생에 따라 4천만 원을 다른 사업(노동자 복지우수정책사례 발굴지원)으로부터 전용('22.8.4.)받아 사용하고,

- 금회 추경예산안에 승강기 빔보강 관련공사, 내부엘리베이터 확장 연관 편의시설 설치공사 등 비용으로 3억 4천만 원을 추가 요구함

- 예산의 전용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칠 필요는 없으나, 금회 추경예산안 편성 시기(8월)에 민간자본이전 성격의 사업비를 일부 전용·사용하는 것보다는, 예산안에 편성하여 추가 공사비용 투입 필요성 등에 대한 의회 심사를 거쳐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했을 것으로 사료됨

< 예산 전용 현황[24] >

(단위 : 백만원)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통계목	기정액 (a)	증감액 (b)	계 (a+b)	전용사유
합 계		(감 액)	-	28,113	△153	27,960	-
		(증 액)	-	1,513	153	1,666	-
1	총무과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자체/직접)	포상금	1,252	△45	1,207	청사 이전 기간 중 구청사·신청사 방호 인력 추가 배치
		청사방호 효율성 제고(자체/직접)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129	45	174	
2	총무과	후생복지 지원(자체/직접)	맞춤형복지 제도시행경비	13,229	△5	13,224	
		청사방호 효율성 제고(자체/직접)	맞춤형복지 제도시행경비	3	5	8	

2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요구자료 1차-13번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통계목	기정액 (a)	증감액 (b)	계 (a+b)	전용사유
3	총무과	후생복지 지원(자체/직접)	맞춤형복지 제도시행경비	13,224	△26	13,198	경기도청 부속의원 기간제노동자 채용에 따른 급여 부족분 집행
		후생복지 지원(자체/직접)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444	26	470	
4	총무담당관	인사업무 추진(자체/직접)	사무관리비	70	△11	59	「경기도의회 공무원 면접시험 실비 지원 조례」 제정(2022. 3.)에 따른 면접시험 실비 집행
		인사업무 추진(자체/직접)	기타보상금	0	11	11	
5	미래산업과	드론체험 활성화 지원(자체/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100	△5	95	양평체험장 교육사업 지원을 위한 드론구입
		드론체험 활성화 지원(자체/지원)	자치단체 자본보조	0	5	5	
6	세정과	지방세정 운영(자체/직접)	자산물품 취득비	10	△9	1	당초 신용카드단말기 구입 계획을 임차로 변경
		지방세정 운영(자체/직접)	사무관리비	364	9	373	
7	노동정책과	노동자복지우수 정책사례발굴지원 (자체/직접)	민간경상 사업보조	85	△40	45	편의시설(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중 추가공사 발생
		경기도노동복지 센터 운영지원 (자체/직접)	민간위탁 사업비	549	40	589	
8	문화종무과	위원회 운영 (자체/직접)	사무관리비	143	△12	131	휴직기간 연장에 따른 휴직자 대체인력(기간제근로자) 계약기간 연장
		문화예술활동 지원(자체/직접)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24	12	36	

바. 예산편성 사전절차 이행여부

o 경기도의 「2022년도 예산편성세부지침」에 따르면, 예산 편성시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른 예산편성 사전절차* 이행 후 예산총괄부서에 예산편성을 요구하도록 하고, 미 이행시 예산에 반영하지 않도록 함

* 재정합의/지방재정투자심사/지방보조금심의/공유재산심의/신규행사축제성사업심사/학술용역사전심의/정보화사업사전협의/민간위탁(대행)사업사전심의 등

o 道가 제출한 자료[25]에 따르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사업 중 사전절차 이행 대상 사업은 38건으로, 예산안 제출일('22.9.8.) 기준, 4건이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있음

- 장애인 기회소득 정책연구용역 5천만 원(복지국), 경기도 기후대응기금 조성 및 운용방안 연구용역 6천만 원(환경국),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플러스 기본구상 용역 12억 원(철도항만물류국) 이상 3건은 '정책연구용역 심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음

※ 위 3건은 '22. 9. 22. 정책연구용역 심의 절차를 사후 이행한 것으로 확인됨

- 마이크로LED 디스플레이 산업화 지원 기반 구축(국가직접지원) 4억 3천만 원(경제실)은, 한국광기술원 출연금 편성에 따른 '공공기관 출자 또는 출연계획 도의회 사전 동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음

※ 위 건은 '2022년도 한국광기술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제363회 임시회에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안 가결('22.9.23.)

o 그 밖의 사업은 사전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보이나, 의회 심의과정에서 금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사업이 관련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예산 편성 요건을 준수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2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요구자료 1차-11번

< 예산편성 사전절차 이행 여부(예산안 제출일 '22.9.8. 기준)[26] >

(단위 : 백만원)

연번	부서명	구분	사업명	통계목	제2회 추경예산안	예산편성사전절차	
						이행대상	이행여부
1	정보통신보안 담당관	신규	경기도 통합데이터센터 구축 (평가위원수당등,통합데이터센터중간·실시설계)	사무관리비/ 시설비	955	지방재정투자심사	O ('21.10.19.)
						공유재산심의	O ('22.6.3.)
						재정합의	O ('22.9.2.)
2	자치행정과	신규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공기관등 자본적위탁 사업비	29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심사	O ('22.8.16.)
3	자산관리과	신규	구청사 정보통신망 구축 실시설계	시설비	50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심사	O ('22.8.16.)
4	자산관리과	신규	경기공유서비스 운영 필수SW구입	사무관리비	40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심사	O ('22.8.16.)
5	장애인복지과	신규	장애인 기회소득 정책연구용역	연구용역비	50	정책연구용역심의	X
6	장애인복지과	신규	학대피해 장애아동 쉼터 설치비	민간위탁금	1,142	민간위탁(공기관대행) 사전심의	O ('22.5.19.)
7	공공의료과	증액	심야전기 노후설비 교체	공기관등 자본적위탁 사업비	830	민간위탁(공기관대행) 사전심의	O ('22.9.5.)
8	정신건강과	신규	경기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118	민간위탁(공기관대행) 사전심의	O ('22.5.24.)
9	기후에너지 정책과	신규	경기도 기후대응기금 조성 및 운용방안연구	연구용역비	60	정책연구용역심의	X
10	콘텐츠정책과	증액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 랩 운영	공기관등 경상적위탁 사업비	40	민간위탁(공기관대행) 사전심의	O ('21.9.23.)
11	예술정책과	신규	경기도 문화예술인 기회소득 정책연구용역	연구용역비	50	정책연구용역심의	O ('22.8.25.)

2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요구자료 1차-11번

연번	부서명	구분	사업명	통계목	제2회 추경예산액	예산편성사전절차	
						이행대상	이행여부
12	관광과	신규	야영장 캠핑카 관련 인프라 구축	공기관등 자본적위탁 사업비	100	재정합의	O ('22.5.16)
						민간위탁(공기관대행) 사전심의	O ('22.7.1.)
13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증액	남한산성 가공배전선 지중화	자치단체 자본보조	244	재정합의	O ('22.8.12.)
14	교육협력과	신규	경기도 교육협력지원사업 중기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60	정책연구용역심의	O ('22.8.25.)
15	가족다문화과	신규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591	재정합의	O ('22.6.14.)
16	가족다문화과	신규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기관 운영	민간위탁금	338	재정합의	O ('22.6.28.)
17	아동돌봄과	신규	아동급식지원 신규플랫폼 연동 배달시스템개발	공기관등 자본적위탁 사업비	150	재정합의	O ('21.12.31.)
						정보화사업 예산 타당성심사	O ('22.8.16.)
18	아동돌봄과	신규	아동학대방지 인프라 기능보강 사업	민간위탁 사업비	50	재정합의	O ('22.7.12.)
				자치단체 자본보조	39	재정합의	O ('22.7.12.)
19	균형발전담당관	신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연구용역	연구용역비	200	정책연구용역심의	O ('22.6.29.)
20	광역교통정책과	증액	경기도형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778	재정합의	O ('22.8.1.)
21	철도정책과	신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플러스 기본구상 용역	연구용역비	1,200	정책연구용역심의	X
22	동물방역위생과	신규	야생조수 차단 지원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	288	재정합의	O ('22.7.28.)
23	동물방역위생과	신규	소 보툴리즘 등 예방백신 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60	재정합의	O ('22.8.5.)

연번	부서명	구분	사업명	통계목	제2회 추경예산안	예산편성사전절차	
						이행대상	이행여부
24	산림과	신규	동절기 담수지 자동 결빙방지 장치 설치	자치단체 자본보조	114	재정합의	O ('22.8.5.)
25	산업정책과	신규	(산단대개조) 지역선도산업단지 연계협력사업(R&D) (국가직접지원)	공기관등 경상적위탁 사업비	488	지방재정투자심사	O ('22.8.23.)
						재정합의	O ('22.6.27.)
26	산업정책과	신규	반도체 소부장 요소기술 실증기반 테스트베드구축 (국가직접지원)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 사업비	2,300	지방재정투자심사	O ('22.8.23.)
						재정합의	O ('22.8.10.)
27	투자진흥과	신규	첨단 반도체기업 고용보조(부천) (국가직접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750	재정합의	O ('21.11.17.)
28	미래산업과	신규	산업 밸류체인 디지털전환 지원센터 조성 (국가직접지원)	출연금	300	재정합의	O ('22.3.29.)
						지방재정투자심사	O ('22.8.23.)
29	과학기술과	신규	마이크로LED 디스플레이 산업화 지원 기반 구축 (국가직접지원)	출연금	430	지방재정투자심사	O ('22.8.4)
						공공기관 출자 또는 출연계획 도의회 사전동의	X
30	과학기술과	신규	메이커스페이스 전문랩 구축운영 (국가직접지원)	공기관등 자본적위탁 사업비	375	지방재정투자심사	O ('22.8.)
						민간위탁(공기관대행) 사전심의	O ('22.9.5)
31	과학기술과	신규	5차 산업혁명 초개인화 · HI 미래기술 기반, 콰트로 상생 플랫폼 구축 (국가직접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75	지방재정투자심사	O ('21.11.)
32	데이터정책과	신규	AI 기반 미래차 제조데이터 활성화 사업 (국가직접지원)	출연금	2,000	재정합의	O ('22.2.24.)
						지방재정투자심사	O ('22.8.23.)
33	해양수산과	신규	귀어학교 개설	자산및물품 취득비	104	재정합의	O ('22.7.25.)

연번	부서명	구분	사업명	통계목	제2회 추경예산액	예산편성사전절차	
						이행대상	이행여부
34	친환경급식 지원센터	증액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1,300	재정합의	O ('22.7.22.)
35	친환경급식 지원센터	증액	도교육청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지원	교육기관에 대한보조	6,300	재정합의	O ('22.8.16.)
36	사회적경제과	신규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설립 및 운영지원	출연금	385	공공기관 출자 또는 출연계획 도의회 사전 동의	O ('22.6.29.)
37	농수산물검사부	신규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수산물 현장검사소 설치 지원)	자산및물품 취득비	1,500	재정합의	O ('22.7.27.)
38	북부자치경찰 협력과	신규	주취자 보호조치 지원 사무실 운영	사무관리비	9	재정합의	O ('22.7.11.)
				자산및물품 취득비	11	재정합의	O ('22.7.11.)

III 특별회계

1. 총괄현황

□ 예산규모 : 3조 6,943억 원 ('22년 1회 추경 대비 616억 원↑, 1.7%↑)

(단위: 억 원)

구 분	'22년 제2회 추경안(A)	'22년 1회 추경(B)	증 감 (A-B)	비 고
합 계	36,943	36,327	616	
공기업특별회계(2종)	504	482	22	
○ 판교테크노밸리	297	275	22	(세입) 잉여금 15억원, 영업외수익 등 7억원 (세출) 예탁금 28억원, 공기관위탁사업비 △6억원
○ 고덕국제화계획지구	207	207	-	
기타특별회계(10종)	36,439	35,845	594	
○ 의료급여기금	18,013	17,953	60	(세입) 잉여금 52억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8억원 (세출) 예비비 52억원, 국비반납액 등 8억원
○ 팔당호관리	64	48	16	(세입) 국비사용잔액 13억원, 잉여금 등 3억원 (세출) 국비 반납 13억원, 예비비 3억원
○ 학교용지부담금	1,223	1,223	-	
○ 광역교통시설	2,319	2,175	144	(세입) 순세계잉여금 126억원, 환승센터건립 18억원 (세출) 환승센터건립 30억원, 부담금·국고반납 등 114억원
○ 도시재정비촉진	8	7	1	(세입) 순세계잉여금 등 3천만원 (세출) 예탁금 등 3천만원
○ 지역균형발전	675	675	-	
○ 소방안전	12,338	12,053	285	(세입) 지역자원시설세 260억원, 잉여금 317억원, 일반회계 △308억원, 기타 16억원 (세출) 장비보강 50억원, 예탁금 170억원, 소방청사 28억원, 기타 37억원
○ 도시재생	1,302	1,261	41	(세입) 도시재생 뉴딜 34억원, 전입금 등 7억원 (세출) 도시재생 뉴딜사업 41억원
○ 지역자원시설세	146	103	43	(세입) 지역자원시설세 17억원, 잉여금 등 26억원 (세출) 예탁금 39억원, 에너지 융자지원 등 4억원
○ 자원순환	351	347	4	(세입) 소각시설 설치 △12억원, 잉여금 등 16억원 (세출) 소각시설 확충 △12억원, 예탁금 등 16억원

* 공기업특별회계 1종(고덕국제화계획지구), 기타특별회계 2종(학교용지부담금, 지역균형발전)은 변동 없음

2. 회계별 세입·세출 현황

가. 공기업특별회계

o (판교테크노밸리) 기정예산(275억 원) 대비 22억 원 증가한 297억 원

- 세입 : 순세계잉여금 15억 원, 예금이자수익·기타영업외수익 11억 원, 기타임대수익 △4억 원
- 세출 : 예탁금 28억 원, 판교 제2TV 산업단지관리 △3억 원, 경기도자율센터 운영 △3억 원

나. 기타특별회계

o (의료급여기금) 기정예산(1조 7,953억 원) 대비 60억 원 증가한 1조 8,013억 원

- 세입 : 순세계잉여금 52억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8억 원
- 세출 :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8억 원, 예비비 52억 원

o (팔당호관리) 기정예산(48억 원) 대비 16억 원 증가한 64억 원

- 세입 : 순세계잉여금·이자수입 등 3억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3억 원
- 세출 : 국고보조금 반환금 13억 원, 예비비 3억 원

o (광역교통시설) 기정예산(2,175억 원) 대비 144억 원 증가한 2,319억 원

- 세입 : 순세계잉여금 126억 원, 국고보조금등(환승센터 건립사업) 18억 원
- 세출 : 부담금(시·군 징수교부금 지급) 25억 원, 부담금(국고귀속) 121억 원, 공영버스 차고지 지원사업 △42억 원, 킨텍스역·구리역 환승센터 건립 30억 원, 야동-금승 도로확포장 10억 원

o (도시재정비촉진) 기정예산(7억 4천만 원) 대비 3천만 원 증가한 8억 원

- 세입 : 순세계잉여금 등 3천만 원
- 세출 : 예탁금 등 3천만 원

o (소방안전) 기정예산(1조 2,053억 원) 대비 285억 원 증가한 1조 2,338억 원

- 세입 : 순세계잉여금 317억 원, 일반회계전입금 △308억 원,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260억 원, 소방안전교부세 8억 원, 기타 8억 원
- 세출 : 장비보강 50억 원, 소방청사 28억 원, 기타 37억 원, 예탁금 170억 원

o (도시재생) 기정예산(1,261억 원) 대비 41억 원 증가한 1,302억 원

- 세입 :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4억 원, 일반회계전입금 등 7억 원
- 세출 : 도시재생뉴딜사업 41억 원

o (지역자원시설세) 기정예산(103억 원) 대비 43억 원 증가한 146억 원

- 세입 : 순세계잉여금 17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17억 원, 보조금반환수입 등 9억 원
- 세출 : 에너지융자지원사업 5억 원, 급수취약계층 음용지하수 수질검사비 지원 등 △1억 원, 예탁금 39억 원

o (자원순환) 기정예산(347억 원) 대비 4억 원 증가한 351억 원

- 세입 : 순세계잉여금 5억 원, 징수교부금 5억 원, 국고보조금 △9억 원, 보조금반환수입 등 3억 원
- 세출 : 소각시설 설치 △12억 원,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지원 4억 원, 유해폐기물 처리 및 대집행 등 1억 원, 예탁금 등 11억 원

3. 국비사업

o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국비사업은 총 22개 사업(부기명 기준), 기정액 대비 증감액 84억 원(↑)으로,

- 국비 등 57억 원(↑), 도비 27억 원(↑)을 편성함

< 제2회 추경예산안 국비사업 편성 현황(총괄)[27] >

(단위 : 백만 원)

구 분	사업개수 (부기기준)	기정액 (a)			증감액 (b)			예산안 (c=a+b)		
		계	국비 등	도비	계	국비 등	도비	계	국비 등	도비
계	22	2,006,687	1,629,578	377,109	8,444	5,724	2,720	2,015,131	1,635,302	379,829
국고보조금	16	1,794,924	1,437,765	357,159	519	△188	707	1,795,443	1,437,577	357,866
균형발전특별 회계보조금	4	118,886	98,936	19,950	7,170	5,157	2,013	126,056	104,093	21,963
기금	-	-	-	-	-	-	-	-	-	-
교부세	2	92,877	92,877	-	755	755	-	93,632	93,632	-

4. 자체사업(경상·투자사업)

가. 신규편성

o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신규 자체사업은 21개 사업(부기명 기준), 58억 원임

< 신규편성 사업현황(총괄)[28] >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 개수 (부기기준)	기정액 (a)	증감액 (b)	예산안 (c=a+b)
계	21	-	5,842	5,842
경상사업	5	-	3,691	3,691
투자사업	16	-	2,151	2,151

2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요구자료 1차-9번 가.
2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요구자료 1차-10번 가.

< 신규 자체사업 주요 편성 현황(1억 원 이상)[29] >

(단위 : 백만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통계목	제2회추경 예산안	신규편성 사유
1	도로정책과	< 광역교통특별회계 > 야동-금승 도로확포장공사	자치단체간 부담금	1,000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설계비 편성 (도비 50%, 시군 50% 보조사업)
2	회계장비 담당관	< 소방안전특별회계 > 구조장비 보강 (노후장비등교체)	자산및물품 취득비	1,453	신설 용인구조대, 신설 펌프구조대(3대) 장비 보강
3	회계장비 담당관	< 소방안전특별회계 > 소방차량 안전장치 보강 (소방차량안전장치보강)	자산및물품 취득비	1,024	어라운드뷰(394개) 미설치 소방차량 신규 설치
4	회계장비 담당관	< 소방안전특별회계 > 특수소방차량 보강 (특수재난대응장비보강)	자산및물품 취득비	950	특수소방차량(다굴절 무인방수탑차) 1대 보강
5	재난예방과	< 소방안전특별회계 > 위험물질 안전관리 강화 (위험물사고조사장비구매)	자산및물품 취득비	108	초음파두께측정기(탱크검측) 35점 구입
6	용인소방서	< 소방안전특별회계 > 소방관서 신축 및 이전 (성복119안전센터신축)	시설비	330	건축비 물가상승분 반영
7	안성소방서	< 소방안전특별회계 >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공조설비교체)	시설비	317	노후 공조설비 교체
8	가평소방서	< 소방안전특별회계 > 소방관서 증축 (북면지역대증축)	시설비	81	북면119지역대 증축 설계비 반영

2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요구자료 1차-10번 나.

나. 증액편성

o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사업 중 기정예산 대비 증액 편성한 자체사업은 57개 사업(부기명 기준)으로, 168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함

< 증액편성 사업현황(총괄)[30] >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 개수 (부기기준)	기정액 (a)	증감액 (b)	예산안 (c=a+b)
계	57	60,486	16,817	77,303
경상사업	46	14,009	2,471	16,480
투자사업	11	46,477	14,346	60,823

< 증액편성 자체사업 주요 현황(1억 원 이상 증액)[31] >

(단위 : 백만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통계목	기정액 (a)	제2회 추경(안) (b)	제2회 추경(안) 증감액 (b-a)	증액편성사유
1	기후에너지정책과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에너지 융자지원사업	민간융자금	2,000	2,500	500	접수 20억(100%)→ 추천 19억(95%) →실행 7.4억(37%) ※ 현재 95% 융자추천 완료로, 자체 수요 조사 결과를 반영한 사업비 증액 편성
2	광역교통정책과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국고귀속분	기타부담금	36,164	48,219	12,055	2022년 상반기 부담금 징수액이 전년 대비 급증하였고, 하반기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추가편성
3	재난예방과	<소방안전특별회계> 소방특별조사 전문성 강화 (소방특별조사전문성 강화장비)	자산물품 취득비	55	179	124	초음파 액면측정기(소화약제 약제량 측정) 25점 구입
4	회계장비담당관	<소방안전특별회계> 소방장비 보강 (소방차량보강)	자산물품 취득비	4,787	6,038	1,251	소방펌프차(2대), 조연차(1대) 보강

3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요구자료 1차-10번 가.
3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요구자료 1차-10번 다.

연번	부서명	사업명	통계목	기정액 (a)	제2회 추경(안) (b)	제2회 추경(안) 증감액 (b-a)	증액편성사유
5	특수대응단	<소방안전특별회계> 소방항공대 운영 (헬기유류비)	공공운영비	318	421	103	소방헬기(3대) 항공유 인상에 따른 부족분 반영
6	평택 소방서	<소방안전특별회계> 세교119안전센터 신축	시설비	1,074	1,312	238	건축비 물가상승분 반영(계속비 사업)
7	의정부 소방서	<소방안전특별회계> 녹양119안전센터 신축	시설비	1,074	1,322	248	건축비 물가상승분 반영(계속비 사업)
8	남양주 소방서	<소방안전특별회계> 다산119안전센터 신축	시설비	1,074	1,303	229	건축비 물가상승분 반영(계속비 사업)
9	화성 소방서	<소방안전특별회계> 팔탄119안전센터 신축	시설비	1,074	1,335	261	건축비 물가상승분 반영(계속비 사업)
10	수원 소방서	<소방안전특별회계> 이의119안전센터 신축	시설비	1,661	2,070	409	건축비 물가상승분 반영(계속비 사업)
11	안산 소방서	<소방안전특별회계> 공조설비교체	시설비	66	281	215	노후 공조설비 추가 교체
12	부천 소방서	<소방안전특별회계> 소규모안전체험관 설치	시설비	1,050	1,192	142	건축비 물가상승분 반영

다. 감액편성

o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사업 중 기정예산 대비 감액 편성한 자체사업은 9개 사업(부기명 기준)으로, △49억 원을 감액하여 편성함

< 감액편성 사업현황(총괄)[32] >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 개수 (부기기준)	기정액 (a)	증감액 (b)	예산안 (c=a+b)
계	9	6,063	△4,947	1,116
경상사업	0	0	0	0
투자사업	9	6,063	△4,947	1,116

< 감액편성 자체사업 주요 현황(1억 원 이상 감액)[33] >

(단위 : 백만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통계목	기정액 (a)	제2회 추경(안) (b)	제2회 추경(안) 증감액 (b-a)	감액편성사유
1	버스정책과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공영 버스 차고지 지원 사업	자체단체 자본보조	4,210	-	△4,210	버스차고지와 트램차량 기지 중복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사업비가 증가됨에 따라 행정절차(타당성 재조사 및 중앙투자심사 재협의 등) 이행 기간 소요로 부담금 지원 취소
2	미래산업과	<판교테크노밸리 공기업특별회계> 판교제2TV산업단지 관리	공기관등 경상적 위탁사업비	720	420	△300	판교2TV 스마트산단 구축사업 준공 지연으로 인한 운영 관리비 감액
3	미래산업과	<판교테크노밸리 공기업특별회계> 경기도자율주행 센터운영	공기관등 경상적 위탁사업비	3,700	3,370	△330	자율주행 등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력채용 지연에 따른 인건비 감액
4	가평소방서	<소방안전특별회계> 소방청사관리 (북면119지역대청사 리모델링)	시설비	278	-	△278	북면119지역대 소방관서 증축에 따른 감액

3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요구자료 1차-10번 가.
3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요구자료 1차-10번 라.

Ⅳ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 총괄현황

□ 운용규모 : 6조 591억 원 ('22년 기정액 대비 1,456억 원↓, 2.3%↓)

구 분		'22년 2회 추경 (A)	'22년 기정액(B)	증 감 (A-B)	비 고
합 계(21개 26종)		60,591	62,047	△1,456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통합계정	6,087	7,636	△1,549	(수입) 예탁금원금회수 △1,800억원, 예수금 248억원, 이자수입 1억원, 예치금회수 2억원 (지출) 예치금 △1,549억원
	재정안정화 계정	17,912	15,385	2,527	(수입) 예치금회수 7억원, 일반회계전입금 2,520억원 (지출) 예치금 △6,473억원, 일반회계전출금 9,000억원
지역개발기금		21,541	23,505	△1,964	(수입) 채권발행 △1,500억원, 예치금회수 △494억원, 시군 융자 원리금 회수수입 31억원, 도 융자 원리금 회수수입 △1억원 (지출) 시군 융자 △216억원, 예치금 △1,748억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전자금	2,665	3,342	△677	(수입) 예치금회수 △677억원 (지출) 예치금 △677억원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	3,391	3,343	48	(수입) 예치금회수 48억원 (지출) 예치금 48억원
기본금융기금		502	502	-	(지출) 청년기본금융지원 △500억원 예치금 500억원
농업농촌진흥기금 (농업발전계정)		746	664	82	(수입) 예치금회수 82억원 (지출) 시설자금 및 경영자금 지원 33억원, 간척농지 내 밀 재배 시험포장 조성 1억원, 예치금 48억원
주거복지기금		127	121	6	(수입) 도비보조금반환수입 6억원 (지출) 예치금 6억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88	117	71	(수입) 도비보조금반환수입 3억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련 국비보조금 68억원 (지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지원 84억원 예치금 △13억원

※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14개 17종은 변동 없음

2. 기금별 수입·지출 현황

o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기정액(7,636억 원) 대비 △1,549억 원 감소한 6,087억 원

- 수입 : 예탁금원금회수수입 △1,800억 원, 특별회계 예수금*수입 248억 원, 이자수입 등 1억 원, 예치금회수 2억 원

  * 판교테크노밸리 28억 원, 소방안전 170억 원, 도시재정비촉진 3천만 원, 자원순환 11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39억 원

- 지출 : 예치금 △1,549억 원

o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기정액(1조 5,385억 원) 대비 2,527억 원 증가한 1조 7,912억 원

- 수입 : 일반회계전입금 2,520억 원, 예치금회수 7억 원

- 지출 : 예치금 △6,473억 원, 일반회계전출금 9,000억 원

o (지역개발기금) 기정액(2조 3,505억 원) 대비 △1,964억 원 감소한 2조 1,541억 원

- 수입 : 지역개발채권발행 △1,500억 원, 예치금회수 △494억 원, 시·군 융자금 회수수입 31억 원, 도 융자금 회수수입 △1억 원

- 지출 : 시군융자 △216억 원, 예치금 △1,748억 원 등

o (중소기업육성자금-운전자금) 기정액(3,342억 원) 대비 △677억 원 감소한 2,665억 원

- 수입 : 예치금회수 △677억 원

- 지출 : 예치금 △677억 원

o (중소기업육성자금-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기정액(3,343억 원) 대비 48억 원 증가한 3,391억 원

- 수입 : 예치금회수 48억 원
- 지출 : 예치금 48억 원

o (기본금융기금) 기정액(502억 원) 대비 증감 없음

- 지출 : 청년기본금융지원 △500억 원, 예치금 500억 원

o (농업농촌진흥기금-농업발전계정) 기정액(664억 원) 대비 82억 원 증가한 746억 원

- 수입 : 예치금회수 82억 원 등
- 지출 : 민간융자금(시설자금 및 경영자금 지원) 33억 원, 간척농지내 밀 재배 시험포장 조성 1억 원, 예치금 48억 원 등

o (주거복지기금) 기정액(121억 원) 대비 6억 원 증가한 127억 원

- 수입 : 도비보조금반환수입 6억 원
- 지출 : 예치금 6억 원

o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기정액(117억 원) 대비 71억 원 증가한 188억 원

- 수입 : 도비보조금반환수입 3억 원,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68억 원 등
- 지출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지원 84억 원, 예치금 △13억 원

V 주요사업

1.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예산안 357p, 설명서 79p)

《 예 산 현 황 》 [단위: 백만원, '22. 8. 31.기준]

실국명 (부서명)	사업명 (통계목)	구분	계	기정액	제2회 추경안 증감	비고 (집행률)
경제실 (지역금융과)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출연금)	계	121,370	109,967	11,403	31%
		도 비	121,370	109,967	11,403	

o 道는 지난('22년 8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코로나19,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지원을 위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 출연금으로 '고금리 대환 및 저금리 운영자금 지원' 815억 원 등 총 864억 원을 증액 요구(제출)하였고,

- 의회 심사시 △100억 원을 감액한 764억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며,

※ '22년 본예산(33,547백만 원) + 제1회 추경예산(76,420백만 원↑) ⇒ 기정액(109,967백만 원)

- 본 위원회는 감액 조정에 따른 부대의견으로, 보증공급 중복 지원 문제 등에 대한 충분한 대책 마련을 제시한 바 있음

o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재단 출연금 요구액(증액)은 114억 원으로, 산출 내역은,

- '고금리 대환 및 저금리 운전자금' 100억 원

- ''21년 손실보전금' 14억 원임

o '고금리 대환 및 저금리 운전자금'(100억 원)은 보증재원 1,000억 원 조성을 위하여 운용배수[34] 10배를 적용한 100억 원을 출연하는 것이며,

34) 신용보증 운용배수 = 보증잔액* ÷ (기본재산** + 이월이익금)
* 보증잔액 : 일정시점에서 부실채권 및 정상상환 채권을 제외한 정상적으로 신용보증이 운용·유지되고 있는 금액
** 기본재산 : 보증재원 확충을 위해 정부, 지자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수령한 출연금

o ‘21년 손실보전금’(14억 원)은[35], 기존 보증사업 운영 중 채권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재단이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한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道가 재단의 당해연도 손실분에 대한 손실보전금을 회계연도 종료 후 출연하는 것으로, 산출 내역은,

- ‘코로나19 마이너스 대출 특별금융지원’ 손실보전금 762백만 원
- ‘재도전 희망특례보증’ 597백만 원
- ‘기술성 우수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45백만 원임

o 道가 제출한 자료[36]등에 따르면, 보증공급 중복(추가) 지원 방지를 위해, 금회 추경예산안으로 공급될 예정인 보증재원을 ‘취약 계층’과 ‘최초 이용 소상공인’에게 배정하여 신규 대출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설명하고 있으나(하단 표 참조),

- 중복(추가) 보증 지원 현황 및 발생 사유 분석 결과에 따른 보증재원 적정 운용 방안, 신규 대출자 추가 지원을 위한 다양한 홍보 방안, 대위변제율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환대출 보증상품 운용에 따른 리스크 관리 방안 등의 적정 수립 여부를 검토할 필요 있으며,
- 금년도에 대규모 출연금이 투입되는 만큼, 신용보증사업을 통한 한계기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 효과 등에 대한 분석과, 연내 집행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고금리 대환 및 저금리 운전자금 지원계획(안) >

(단위 : 억 원)

구분	지원대상	지원(보증)규모			비고
		제1회 추경	제2회 추경(안)	계	
소상공인	중신용자	3,500	-	4,000	신속지원
	저신용·저소득자		500		중점지원 취약계층
	사회적약자				
	고금리 채무자				
중소기업	경영애로 중소기업	500	500	1,000	선별지원
합 계		4,000	1,000	5,000	

3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요구자료 2차-7번 나.
3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요구자료 2차-7번 가.

2. 경기도일자리재단 운영 지원(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예산안 355p, 설명서 64p)

《 예 산 현 황 》 [단위: 백만원, '22. 8. 31.기준]

실국명 (부서명)	사업명 (통계목)	구분	계	기정액	제2회 추경안 증감	비고 (집행률)
경제실 (일자리경제 정책과)	경기도일자리재단 운영지원 (출연금)	계	38,716	36,050	2,666	63%
		도 비	38,716	36,050	2,666	

o 道는 당초 예산으로 경기도일자리재단(이하 '재단') 인건비 172억 원, 경비 171억 원, 목적사업비(잡아바 서비스 운영) 14억 원 등 361억 원을 출연함

o 재단 주사무소는 현재 '원미어울마당(구 부천시 원미구청)'에 소재하고 있으며, 재단 출범('16년)부터 부천시와 사용 협약('16.9.1 ~ '18.8.31.) 후 2회에 걸친 재사용 허가(1차 '20.12.31.까지, 2차 '22.12.31.까지 연장)를 통해 사용하고 있었으나,

- 부천시는 원미어울마당 일원에 조성될 예정인 '부천 혁신파크' 추진에 따른 원미어울마당 철거 일정('23년 7월)을 고려하여, 재단에 '23년 6월까지 다른 곳으로 이주할 것을 통보하였음

- 이에, 재단은 금회 추경예산안으로, 주사무소 이주*를 위한 인테리어 등 건축공사 설계비 및 감리비용으로 27억 원을 요구함

* 사업위치 : 부천시 길주로 249, 3~6층 / 사업기간 : '22. 8. ~ '23. 3 / 사업량 : 전용면적 3,604㎡

o 그러나, 부천시는 '부천 혁신파크 조성사업' 추진 일정 변경에 따라, 다시 재단 이주 기한을 당초 '23년 6월에서 '24년 3월로 변경되었음을 통보('22. 9. 1.)하였음.

- 이에 '23년까지는 부천시와 협의를 통해 現 주사무소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고, 현재 道의 재단 관리·감독부서는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제출한 재단 주사무소 이주계획을 취소한 것으로 확인됨[37)]

3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요구자료 2차-6번 나.

o 道는 부천시로부터 재단 이주 기한 연장 알림 공문을 ’22. 9. 1.에 받았다고 하나, 입주 기관 이주와 같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문 회신 전에 충분히 기관 간 사전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예산안을 편성해야 함에도,

- ’22. 9. 8. 주사무소 이주 공사비 27억 원을 금회 추경예산안에 포함하여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의회에서 감액 조정해주길 바라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이는 道의 금회 추경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보다 시급한 민생경제 사업 예산에 대한 재원 배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볼 수도 있어,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임

o 아울러, 재단은 공공기관 이전계획에 따라 동두천시로 이전하는 것으로 결정(’20년 9월)되어, 道-동두천시-재단 간 이전 추진 업무협약(’20년 10월), 이전 부지(반환공여지 ‘캠프 님블’) 매입(’22년 5월) 등 절차를 추진 중[38]으로,

- 道 소관부서와 재단은 이전 부지의 토양오염 문제에 대한 정밀 조사 및 토지 정화 추진, 재단 신청사 공사계획 등과 연계하여, 향후 동두천시 이전까지 주사무소 운영 방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필요 있음

3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요구자료 2차-6번 다.

3.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운영 지원(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예산안 358p, 설명서 91p)

《 예 산 현 황 》 [단위: 백만원, '22. 8. 31.기준]

실국명 (부서명)	사업명 (통계목)	구분	계	기정액	제2회 추경안 증감	비고 (집행률)
경제실 (특화기업 지원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운영지원 (출연금)	계	18,944	15,570	3,374	100%
		도 비	18,944	15,570	3,374	

o 道는 당초 예산으로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이하 '진흥원') 인건비 132억 원, 목적사업비 24억 원 등 156억 원을 출연하였으나,

- 당초 예산 편성시, 인건비를 9개월분만 반영하여, 금회 추경예산안에 인건비 부족분 34억 원을 요구함

o 道가 제출한 자료[39]에 따르면, '22년도 진흥원 기관운영비 편성시 R&DB센터 운영수입, 광교BIZ센터 운영 수입 등 기관 수입 중 일부를 인건비·관리비로 우선 산정하고, 인건비 편성 부족분에 대해서 道가 출연하고 있으며,

- 당초 예산 편성시 道 재정 사정 등의 이유로 기관운영비의 9개월만 반영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고, 예산 편성 산출근거 기준인원 또한 당초 232명에서 236명으로 증가(4명↑)한 것으로 나타남

< 제2회 추경예산안 세부 산출내역 >

(단위 : 백만 원)

구 분		'22년 본예산 기준			'22년 2회 추경 예산(안) 기준			'22년 2회추경 道출연금 증감액 (b-a)
		계	道 출연금 (a)	자체 수입	계	道 출연금 (b)	자체 수입	
계		28,801	15,570	13,231	34,070	18,944	15,126	3,374
기관운영비	인건비	13,582	13,171	411	17,747	16,545	1,202	3,374
	관리비	10,861	-	10,861	11,965	-	11,965	-
목적사업비		4,358	2,399	1,959	4,358	2,399	1,959	-

3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요구자료 2차-8번.

< 진흥원 인력과 연동되는 인건비·관리비 세부산출내역 >

(단위 : 명, 월, 백만 원)

구분		'22년 본예산 기준액			'22년 2회 추경 예산(안) 기준액			기준인원 증감사유
		기준인원	개월수	산출액	기준인원	개월수	산출액	
인건비	계	232	9	13,582	236	12	17,747	
	사무직	198	9	11,034	202	12	14,427	T/O 증가
	무기계약직	34	9	1,125	34	12	1,460	
	단시간근로자 보수	-	-	-	-	-	-	
	퇴직급여	232	9	1,423	236	12	1,860	
관리비	계	232	9	4,686	236	12	5,790	
	복리후생비	232	9	578	236	12	588	
	연기금분담금	232	9	1,543	236	12	1,976	
	세금·공과금	232	9	492	236	12	513	
	성과급	232	9	2,073	236	12	2,713	

o 한 회계연도의 모든 지출에 대한 수요를 가급적 정확히 예측하여 당초 예산에 편성하고, 사정 변경 등 예측이 어려운 시급한 수요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나,

- 기관운영비 성격의 인건비를 당초 예산에 일부만 편성하는 것은, 향후 금회 추경예산안 편성 여건과 같이 지방세 세수 감소 등 추경 편성 재원 확보가 어려운 상황 발생시, 인건비조차 충당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므로,

- 향후 기관운영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당초 예산에 연간 소요 인건비 총액을 반영하고, 기관 집행잔액 등 이월액 발생에 따른 출연금 편성 적정 여부도 당초 예산 편성 기준으로 검토해야 할 것임

4.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설립 및 운영지원(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예산안 374p, 설명서 26p)

《 예 산 현 황 》 [단위: 백만원, '22. 8. 31.기준]

실국명 (부서명)	사업명 (통계목)	구분	계	기정액	제2회 추경안 증감	비고 (집행률)
소통협치국 (사회적경제과)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설립 및 운영지원 (출연금)	계	385	-	385	신규
		도 비	385	-	385	

o 道는 사회적경제의 지속 가능한 기반 구축 및 사회적경제조직의 성장 촉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설립을 추진 중임

- 道가 제출한 자료[40]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 설립 절차로, 행안부 설립협의('20.10.28.), 타당성 검토 용역('21.3.19.~9.18.), 道 심의위원회('21.11.10.), 행안부 심의위원회('22.1.20.), 조례 제정('22.3.31.), '22년도 기관 출연계획 사전 동의안 도의회 의결('22.6.29.) 등을 이행하고,

- '22년도 말까지 기관 임원 공모·선임, 설립등기 및 행안부 지정·고시 후 기관 업무를 개시할 계획으로,

- 금회 추경예산안에 법인설립 기본자본금 1억 원, 인건비(12명) 9천만 원, 자산취득비 5천만 원 등 4억 원의 출연금을 요구함

o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설립·운영계획을 살펴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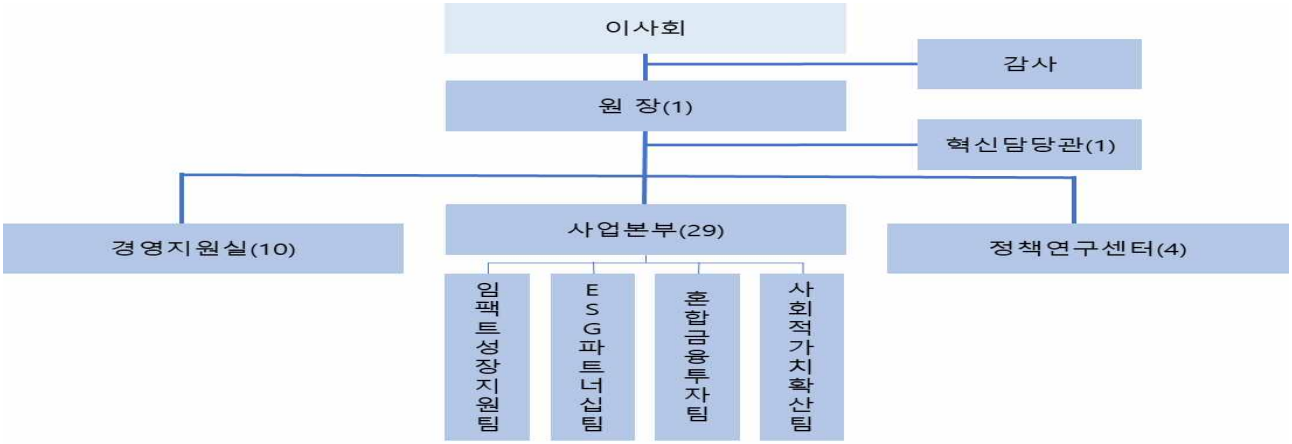
- 주사무소 소재지는 道 구청사 내, 정원은 45명, 조직은 1본부(4팀), 1실, 1센터로 구성되며,

- '23년도 출연예산(계획)은 149억 원(인건비 29억 원, 경상비 12억 원, 목적사업비 108억 원),

- 사회적경제조직 발굴 육성, 민간·공공기업 연계 및 협업 지원, 사회적기업 투자 활성화 기반 마련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4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요구자료 2차-9번.

<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조직·인력(안) >



조직		사업내용
경영지원실(10)		기관 경영전략 수립, 도-도의회 대응, 경영평가관리, 인사노무, 재무회계, 시설자산관리 등
혁신담당관(1)		경제원 정책조정 및 대외협력 지원 등
사업본부(29)	임팩트 성장지원팀(10)	사회혁신 성장지원 사업운영, 협동조합 지원, 지역균형발전 특화사업 추진, 마을기업 지원기관 운영 등
	ESG 파트너십팀(6)	사회환경 난제 솔루션 디스커버리 프로그램 운영, ESG 마켓플레이스, 사회적경제 유통채널 협력사업 등
	혼합금융 투자팀(7)	경기소셜임팩트펀드 조성운영, R&D기반 스케일업 사업, 사회가치 측정평가 등
	사회적가치 확산팀(6)	인재양성 프로그램 운영, 매거진 발간, 온오프라인 홍보, 컨퍼런스개최, 시민사회 네트워크 촉진, 사회혁신복합단지 활성화 등
정책연구센터(4명)		정책개발 연구, 조사사업, DB구축, 정책사업 모니터링 평가, 각종 포럼 세미나 지원, 성과보고서 등

< 경기도사회적경제원 향후 5년간 재정투입계획(안) >

(단위 : 백만 원)

구분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 계		90,081	15,749	18,122	18,425	18,805	18,980
① 출연금	소계	83,769	14,937	16,922	17,125	17,305	17,480
	인건비	16,722	2,932	3,306	3,398	3,494	3,592
	경상비	6,450	1,168	1,226	1,287	1,351	1,418
	목적사업비	60,597	10,837	12,390	12,440	12,460	12,470
②위탁·대행사업비		6,312	812	1,200	1,300	1,500	1,500

① 연도별 증가율 5% 반영, 목적사업비 내 '경기소셜임팩트펀드' 조성 출연금 50억원 포함

② 출연금과 별도로 道·시군 및 타 기관 위탁·대행 사업비 추정금액

o 사회적경제원 설립에 따라, 현재 道가 경기도일자리재단에 위탁하여 유사 사업을 추진 중인 ‘경기도 사회적경제센터*’는 금년도 말까지만 운영하고 사회적경제원으로 흡수할 계획임

* 인력 현원 27명(’22.9.13.) / ’22년도 예산액 61억 원(운영비 24억 원, 사업비 37억 원)

< 경기도 사회적경제센터 주요 사업 현황 >

(단위 : 천 원)

단위사업	’22년 예산액	주요 사업내용
소 계	3,665,000	
정책개발사업	310,000	· 사회적성과 평가지표 개발 연구 · 현안 및 이슈 연구
업종·지역 사회적경제 성장 협력 사업	190,000	· 업종 · 특화 협력사업 · 권역네트워크 활성화 시범사업
사회적경제 홍보사업	195,000	· 경기도 사회적경제 대표영상 제작, 소식지 발간 등 온·오프라인 홍보콘텐츠 확산 · ’21년 개발 홈페이지 유지 관리, 클라우드 임차료
사회적경제 창업성공패키지 사업	400,000	· IR데모데이(신규)
사회적경제기업 경영컨설팅 지원	200,000	· 수요 대응 컨설팅 영역 확대 · 전문컨설팅 지원 규모 확대 및 후속지원 강화
협동조합 지원	620,000	· 상담, 멘토링, 교육, 특화분야 협동조합 지원 등
사회적경제 교육	160,000	· 특성화 고교생 등 청소년 대상 교육 · 사회적금융 전문가, 종사자 역량강화 등 신규 교육과정 개설, 통합교육협의체 운영
공공구매 활성화 지원	100,000	· 공공구매 상담, 컨설팅, DB구축 등
사회적경제 민간 판로지원	1,330,000	· 협약매장 판촉 및 제품 프로모션 확대 · 온라인 판로지원(확대) · 제품성 향상 지원 방식 변경 · 언론 매체 협찬 홍보(신규) 등
사회문제해결 사업화 지원사업	160,000	· 사회문제해결 리빙랩 공모사업(신규) · 비즈니스 사업화 지원 중심

o 금회 추경예산안이 사회적경제원 설립 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 성격의 인건비·운영비 등임을 고려하여, 신속한 설립 추진으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해야 하고,

- 사회적경제원 설립에 따라 향후 재정지출이 증가하고, 현재 道(직접)와 공공기관에서 수행(출연·위탁) 중인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의 대부분을 사회적경제원에서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23년도 예산 편성시 사업 주체간 유사·중복사업 여부, 道 소관 공공기관별 적정 인력 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

5.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예산안 602p, 설명서 66p)

《 예 산 현 황 》 [단위: 백만원, '22. 8. 31.기준]

실국명 (부서명)	사업명 (통계목)	구분	계	기정액	제2회 추경안 증감	비고 (집행률)
농정해양국 (농업정책과)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계	113,934	156,051 (끝수조정)	△42,117 (끝수조정)	65%
		도 비	56,967	78,025	△21,058	
		시군비	56,967	78,025	△21,058	

o 농민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과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시행 '21.5.20.)에 따라 농민 개인에게 年 6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 '22년도는 17개 시·군 244,700명에게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으로 당초 예산 780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 道는 금회 추경예산안에 △211억 원을 감액하여 편성함

※ 당초 지급계획(244,700명) 대비 66,600명 감소한 178,100명 지급계획으로 변경(안)

< 제2회 추경예산안 세부 산출 내역[41] >

(단위 : 백만 원)

산출내역	기정액 (a)	2회추경예산(안) (b)	2회추경예산(안) 증감액 (b-a)	증감사유
계	78,025	56,967	△21,058	
농민기본소득사업비	73,410	53,430	△19,980	대상자감소(66,600명↓)
마을위원회 운영비	1,307	1,283	△24	평균 운영비 조정
읍면동위원회 운영비	138	146	8	위원수 및 횟수 조정
사업보조인력 인건비	1,976	1,928	△48	인력 및 근무 월수 조정
사무관리비	1,161	147	△1,014	보증보험 발행 수수료 감액[42]
명예감시원운영	33	33	-	변동사항 없음

4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요구자료 2차-13번. 나

42) 당초 시·군이 지역화폐 운영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예탁금 형태로 사업비를 교부하는데 따른 금융사고 발생을 대비하기 위한 보증보험 가입비 편성분을 감액한 것임

o 농민기본소득 지급기준은 해당 시·군에서 최근 3년[43] 이상 거주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으로, 농업작물 재배업·축산업·임업 등 구분에 따라 자격 조건을 달리하며, 농업 외 종합소득 3천 7백만원 이상인 자는 제외됨

- 道는 감액 사유를 당초 예측한 지급 인원수 대비 자격요건 미충족에 따른 신청자 수 감소로 설명하고 있으나,

* '22. 8. 31. 기준 지급 실적 149,313명

- 신청자 대비 자격요건 미충족자 비율 등 구체적인 감액 사유를 제시할 필요 있고, 집행 부진 사유가 농민기본소득위원회 운영(지급기준 충족 여부 확인·검증 수행), 홍보 부족 등 사업 운영 측면에 있지는 않았는지 점검·보완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임

< '22년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집행실적('22.8.31.기준)[44] >

(단위 : 백만 원, 명)

시군명	'22년 지급계획(본예산 기준)		'22년 집행내역(도비)			
	道 예산액	지급인원	지출액(교부액)	지급인원(계획)	실집행액	지급인원
계	78,025	244,700	56,967	178,100	22,394	149,313
가평군	3,151	10,000	2,653	8,500	1,013	6,757
광주시	3,295	10,000	1,968	5,700	740	4,935
김포시	4,802	15,000	3,791	12,000	1,189	7,926
동두천	636	2,000	478	1,500	151	1,011
안성시	8,047	25,000	5,817	18,000	2,515	16,765
양주시	3,162	10,000	2,239	7,000	893	5,954
양평군	6,915	22,000	5,308	17,000	2,380	15,865
여주시	6,889	22,000	5,621	18,000	2,297	15,315
연천군	2,262	7,000	2,086	6,500	869	5,793
용인시	6,900	22,000	3,767	12,000	1,460	9,736
의왕시	830	2,700	254	800	92	618
의정부	1,272	4,000	695	2,100	251	1,672
이천시	7,598	23,000	6,293	19,000	2,623	17,487
파주시	6,322	20,000	5,027	16,000	1,572	10,483
평택시	9,592	30,000	6,505	20,000	2,477	16,514
포천시	5,084	16,000	4,149	13,000	1,761	11,742
하남시	1,268	4,000	316	1,000	111	740

43) 연속 3년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4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요구자료 2차-13번 가.

6. 수요응답형 버스(DRT) 운영(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 769p, 설명서 33p)

《 예 산 현 황 》 [단위: 백만원, '22. 8. 31.기준]

실국명 (부서명)	사업명 (통계목)	구분	계	기정액	제2회 추경안 증감	비고 (집행률)
교통국 (광역교통 정책과)	수요응답형 버스(DRT) 운영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계	2,594	-	2,594	신규
		도 비	778	-	778	
		시군비	1,816	-	1,816	

o 신도시나 교통 취약 지역 등 대중교통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하여, 승객 호출에 따라 버스를 배차하는 수요응답형 버스(DRT) 도입·운영을 위하여, 금회 추경예산안으로 7억 8천만 원을 요구함

- 道는 금회 추경예산안 편성에 앞서, 당초 예산으로 2억 7천만 원을 편성*하여, 파주시에 수요응답형 버스 시범사업을 운영 중으로(10대),

  * '22년 본예산에 버스정책과 소관 '경기도형 DRT 지원(자체/지원)' 2억 7천만 원 신규 편성

- 道가 제출한 자료[45]에 따르면, 파주시(운정·교하 지구) 시범사업 성과로 이용객(174,671명), 이동시간 단축(기존 노선버스 대비 최대 21분), 만족도 조사 결과(응답자 79% 만족, 92% 증차 희망)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 금회 추경예산안 편성을 통해, 파주시 포함 총 8개 시·군(82대)으로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을 확대할 계획으로,

- 예산안 산출내역은 수요응답형 버스 운송업체[46]의 손실금(운송비용-운송수입)을 道(30%)와 시·군(70%)이 부담하여 지원하는 것임

  ※ 산출근거 : 운행대수 82대 x 1일·대당 손실금(운송비용 500천원 - 운송수입 156천원) x 92일

시·군	운행지역	운행대수	시·군	운행지역	운행대수
평택시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15	수원시	광교1동 일원	10
화성시	동탄1,2지구/향남읍	20	하남시	감일지구/북위례	6
안산시	대부도 일원	4	양주시	회천4동(옥정지구)/양주2동 일원	10
고양시	고봉/식사동 일원	7	파주시	운정지구·교하지구	10

4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요구자료 2차-4번.
46)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한정면허(5년 + 4년)

o 수요응답형 버스 운송사업자는 총비용 입찰방식으로 한정면허(5년 + 4년)가 부여되며, 요금체계는 일반형 시내버스 요금(1,450원) 및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이 적용됨

o 道는 향후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대상지, 운영 대수 등 사업 규모를 확대할 계획[47]으로, 확대 운영에 따른 재정 투입이 증가할 것으로 보임

- 버스 운송업체의 손실금을 사후 보전하는 방식으로 재정이 지원되므로, 道 재정 효율성 확보(재정 투입 시기 배분 등)를 위해서는 예산 편성시 탑승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가급적 사업수요(이용자)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고,

※ 제2회 추경예산안 운송업체 등 재정지원사업 감액편성 사례

- 시외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청소년할인지원금) △23억 원
-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청소년할인지원금) △48억 원
- 심야공항버스 지원 △9억 원 등

- 수요응답형 버스 도입에 따른 기존 대중교통 운송사업(시내버스, 택시 등)의 수요 감소에 따른 재정지원 증가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고려하여 추진할 필요 있음

4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요구자료 2차-4번

7. 기본금융기금 - 청년기본금융 지원(경제노동위원회 소관)

(변경안 71p, 설명서 239p)

《 지출계획 변경(안) 》 [단위: 백만원, '22. 8. 31.기준]

실국명 (부서명)	사업명 (통계목)	계	기정액	제2회 변경안 증감	비고
경제실 (지역금융과)	계	50,198	50,198	-	이자수입 (198백만원)
	청년기본금융 지원 (이차보전금)	-	50,000	△50,000	
	도금고 예치 (도금고 예치금)	50,198	198	50,000	

o 道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청년금융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21.10.21.시행)하고, 청년기본금융을 실현하기 위한 필요한 사업 등 지원을 목적으로 '기본금융기금'을 설치함

- 금년도 당초 예산으로 일반회계 기금전출금 500억 원을 편성하여 기금 재원을 조성하고, 당초 기금운용계획으로 '청년기본금융지원' 사업 500억 원을 수립하였으나,

- 금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청년기본금융 지원' 사업을 △500억 원 감액하고, 도금고 예치금을 500억 원 증액 조정함

o 道가 제출한 자료[48]에 따르면, 당초 청년기본금융 지원사업(500억 원)을 통해 만25세 ~ 34세 청년에게 1조 원 규모의 저금리 대출을 지원(이차보전금)할 계획이었으나, 사업 수행 금융기관 협약 및 전산시스템 구축 지연 등을 사유로 감액 조정한 것으로 보임

<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설계(안) >

구 분	기본대출	기본저축
지원한도	1인당 5백만원	협약 결정
적용금리	협약 결정	특별우대금리 적용(협약 결정)
지원기간	최대 10년 (매년 자동연장)	좌동
운용방식	하나의 '가칭'기본금융계좌' 내에서 기본대출 및 기본저축 동시 구현	
	마이너스대출 (한도거래)	수시입출식
이자	월 단위 후취	협약 결정

4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요구자료 2차-12번.

o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 절차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당초 예산 편성시 일반회계 기금전출금을 과다 편성하여 道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한 부분이 있으며,

- 이차보전금 지원 방식의 사업으로, 현재 금리 인상 추세에 따라 향후 사업 수행 금융기관 참여가 어려워지고, 이에 따른 청년 대출 조건이 당초 계획 대비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 道는 청년금융 지원사업의 실행 기반 마련, 본격적인 사업 시행계획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일정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 있음